

2018. 9. 19.(수)

제367회 정례회

심 사 보 고 서

2017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17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충 청 북 도 의 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목 차

- I. 심 사 경 과
- II. 제안설명 요지
- III. 전문위원 검토 보고
 - ① 세입·세출 결산
 - 1. 세입·세출결산 총괄
 - 2. 일반회계 결산
 - 가. 세입결산
 - 나. 세출결산
 - 다. 예산 이용·이체·전용
 - 라. 계속비 집행
 - 마. 예비비 지출
 - 바. 이월사업비
 - 사. 집행잔액
 - 아. 채무부담행위(없음)
 - 3. 특별회계 결산
 - ② 기금 결산
 - ③ 채권·채무 결산
 - ④ 재산·물품 결산
 - ⑤ 결산검사 결과 요약
 - ⑥ 주요 재정사항 요약
 - ⑦ 예비비 지출
- IV. 성과보고서
- V. 성인지 결산
- VI. 심사의견 요지
- VII. 심 사 결 과

2017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17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출예산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심 사 보 고 서

I .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18년 8월 28일, 충청북도지사
2. 회부일자 : 2018년 9월 10일
3. 상정 및 의결일자

제367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18. 9. 11.(화)

-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II . 제안설명 요지

(행정국장 민광기)

- 2017회계연도 예산현액은 4조 5,606억 2,138만원
 - 실제수납액 4조 6,825억 6,159만원
 - 지출액 4조 2,993억 3,892만원
 - 순세계잉여금 2,445억 4,337만원
 - 예비비 33억 7,582만원을 지출결정하여 295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함.

Ⅲ. 전문위원 검토 보고

① 세입·세출 결산

1. 세입·세출결산 총괄

○ 2017회계연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한 세입·세출 결산액은 아래와 같음.

(단위: 백만원)

구 분	예산현액 (A)	결 산		현년도 채 무 상 환	결산상 잉여금				
		세입(B)	세출(C)		다음연도 이월액		보조금 잔 액	순세계 잉여금	
					소 계 (D)=(B-C)	이월액			
총 계	4,560,621	4,682,561	4,299,339	-	383,222	137,529 (7,672)	1,150	244,543	
일반회계	4,073,708	4,194,195	3,861,971	-	332,224	126,229 (7,672)	1,107	204,888	
특별회계	486,913	488,366	437,368	-	50,998	11,300	43	39,655	
기 타	소 계	486,913	488,366	437,368	-	50,998	11,300	43	39,655
	소 방 특별회계	174,609	175,214	161,678	-	13,536	11,300	43	2,193
	의료급여 기 금	225,219	225,295	225,168	-	127	-	-	127
	농 어 촌 개발기금	12,380	12,378	11,972	-	406	-	-	406
	학교용지 부 담 금	32,029	33,600	7,471	-	26,129	-	-	26,129
	광 역 교통시설	12,253	11,472	2,778	-	8,694	-	-	8,694
	충청북도 균형발전	30,423	30,407	28,301	-	2,106	-	-	2,106

※ ()는 자금없는 이월액임 - 이월사업비에 자금없는 이월액 미포함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총 규모(일반회계 + 특별회계)는

- 세입결산 총액(실수납액)이 4조 6,825억 6,159만원으로

· 일반회계 4조 1,941억 9,483만원(89.6%)

· 특별회계 4,883억 6,675만원(10.4%)

예산현액 대비 2.6%인

1,219억 4,021만원이 초과수납 되었으며,

전년도(2017회계연도)보다 3,468억 8,407만원이 감소되었음.

- 세출결산 총액(지출액)은 4조 2,993억 3,892만원으로

· 일반회계 3조 8,619억 7,061만원(89.9%)

· 특별회계 4,373억 6,831만원(10.1%)

예산현액 대비 94.2%를 지출하였으며 전년도(2016회계연도)

91.5%보다 2.7%정도 증가함.

- 다음연도 이월액은 1,452억 77만원으로

예산현액대비 3.2%이며 이중

· 일반회계 1,339억 88만원(92.2%)이고

· 특별회계 112억 9,988만원(7.8%)으로

전년도 1,425억 1,451만원보다 26억 8,626만원(Δ 1.9%)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가. 세입결산

(단위 : 백만원)

회 계 별	예산현액 ㉠	징수결정액 ㉡	수 납 액			미수납액 ㉢=㉡-㉣
			수납총액 ㉣	환급액 ㉤	실제수납액 ㉢=㉣-㉤	
합 계	4,560,621	4,719,568	4,704,372	21,811	4,682,562	37,007
일반회계	4,073,708	4,223,841	4,215,971	21,776	4,194,195	29,646
특별회계	486,913	495,727	488,401	35	488,367	7,360
기타특별회계	486,913	495,727	488,401	35	488,367	7,360

○ 2017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 세입예산현액은 4조 5,606억 2,138만원이며,
- 징수결정액은 4조 7,195억 6,825만원(103.5%)임.

○ 실제수납액은 4조 6,825억 6,159만원으로

- 징수결정액 대비 99.2%(일반회계 99.3%, 특별회계 98.5%)이며
- 예산현액 대비 102.7%(일반회계 102.9%, 특별회계 100.3%)임.

○ 미수납액은 370억 666만원으로

- 징수결정액 대비 0.8%(일반회계 0.7%, 특별회계 1.5%)임.

○ 환급액은 218억 1,056만원으로

- 수납총액 대비 0.5%(일반회계 0.0%, 특별회계 0.01%) 임.

나. 세출결산

(단위 : 백만원)

회 계 별	예산현액	지출원인 행 위 액	지 출 액	다음연도 이 월 액	집행잔액
합 계	4,560,621	4,335,469	4,299,339	145,201 (7,672)	116,082
일 반 회 계	4,073,708	3,894,096	3,861,971	133,901 (7,672)	77,836
특 별 회 계	486,913	441,374	437,368	11,300	38,245
기타특별회계	486,913	441,374	437,368	11,300	38,245

* 다음연도 이월액은 자금없는 이월액을 포함. 자금없는 이월액은 ()로 별도 표시

- 2017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현액은 4조 5,606억 2,138만원이며, 이중 지출액은 4조 2,993억 3,892만원으로 예산현액대비 94.3% (일반회계 94.8%, 특별회계 89.8%)임.

다. 결산상 잉여금 내역

(단위 : 백만원)

회 계 별	계	이 월 액 내 역			보 조 금 집행잔액	순세계 잉여금
		명 시 이 월	사 고 이 월	계속비 이 월		
합 계	383,223	106,091	15,980	15,457	1,151	244,543
일 반 회 계	332,224	95,223	15,557	15,449	1,107	204,888
특 별 회 계	50,998	10,868	424	8	43	39,655
기타특별회계	50,998	10,868	424	8	43	39,655

- 일반회계 결산상 잉여금은 3,322억 2,423만원이며, 이중 명시이월은 952억 2,337만원(28.6%), 사고이월은 155억 5,657만원(4.7%), 계속비이월은 154억 4,895만원(4.6%), 보조금 집행잔액은 11억 731만원(0.3%), 순세계잉여금은 2,048억 8,803만원(61.7%) 임.
- 소방특별회계 등 6개 특별회계 이월액은 509억 9,845만원이며, 이중 명시이월 108억 6,809만원(21.3%), 순세계잉여금 396억 5,534만원 (77.8%)임.

2. 일반회계 결산

가. 세입결산

□ 재원별 수납액

(단위 : 백만원)

구분 재원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수 납 액			미수납액
			수납총액	환 금 액	실제수납액	
합 계	4,073,708	4,223,841	4,215,971	21,776	4,194,195	29,646
지방세수입	945,726	1,092,838	1,084,384	17,940	1,066,445	26,394
세 외 수 입	82,932	96,210	93,064	106	92,958	3,252
지방교부세	621,583	624,173	624,173	0	624,173	0
보 조 금	1,923,601	1,911,091	1,914,821	3,730	1,911,091	0
보전수입등 및내부거래	499,867	499,528	499,528	0	499,528	0

- 2017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결산 규모를 보면 예산현액은 4조 737억 791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은 4조 2,238억 4,102만원(103%)이며
- 실제수납액은 4조 2,159억 7,085만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실수납율은 99.3%임.

< 징수결정액 대비 실수납율 >

(단위 : %)

연 도 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수 납 율	99.2	99.3	99.2	99.2	99.5	99.3

- 예산현액 대비 초과수납액은 1,205억원(지방세 1,207억원, 세외수입 100억원, 지방교부세 △26억원, 보조금 △125억원)등으로 초과수납액이 전년(184억원) 대비 18% 증가하였으며, 이는 대부분 지방세가 초과수납액으로, 재정의 효율성 및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보다 정확한 세수입 추계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 예산현액 대비 초과수납액 현황 >

(단위 : 억원)

연 도 별	2013	2014	2015	2016	2017
초과수납액	307	1,073	882	1,020	1,205

- 환급액은 전년도(115억원 보다 103억원이 증가한 217억 7,601만원으로, 2016회계와 비교하여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이 중 가장 큰 규모를 차지하고 있는 세목은 지난년도수입으로 전체의 49.5%를 차지하고 있고, 다음으로 취득세 26.6% 등으로 나타나고 있음.
- 지방세지난연도수입은 징수결정액 138억원중 수납총액이 93억원으로 수납액 비율이 67.4%이며, 수납액중 과오납반환으로 108억원이 반환되어 실수납액은 △14억원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환급액이 217억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0.5%에 달하고 있어, 이에 대한 원인 파악 및 대책 마련이 절실함.
- 아울러 환급액의 사유별 현황을 살펴보면 납세자의 착오에 의한 이중납부는 총 149억원(68.3%)에 달하고 있으며, 반면 과세관청의 오류나 관계법령 적용 미숙으로 인한 착오부과는 0.4%인 1억원으로 나타나고 있음.

< 검토 의견 >

- 환급액의 대부분이 납세자 착오 등으로 발생하고 있는바, 도민들의 재산권과 관련된 행정행위인 만큼 다양한 홍보로 지방세 부과·징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으로 보임.

< 환급액 현황 >

(단위 : 억원)

연 도 별	2013	2014	2015	2016	2017
반 환 액	350	110	157	114	217
징수결정액 대비반환율	1.1%	0.3%	0.3%	0.2%	0.5%

- 미수납액은 296억 4,619만원으로 전년도(311억원)와 비슷한 규모이며, 이중 지난년도수입의 미수납액이 152억 2,295만원으로 전체의 51.3%를 차지하고 있는 바, 이는 납세자의 납세의무 미이행 및 소송진행 등으로 체납액 징수에 어려운 면도 있겠으나, 징수결정액(138억원) 대비 실수납액(△14억원)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지난년도 수입의 미수납액에 대한 원인과 대책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검 토 의 견 >

- 지방세 체납액 증가는 도민 공정과세에 부정적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교부세 산정시 패널티 부여 요인이므로 지방세 징수율 제고를 위하여 지방세 납세의무 및 과세 당위성에 대한 홍보 등 체납액 징수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임.

< 미수납액 현황 >

(단위 : 억원)

연 도 별	2013	2014	2015	2016	2017
미수납액	218	279	310	312	296
징수결정액 대비미수납율	0.7	0.8	0.8	0.8	0.7

□ 미수납액(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실 제 수 납 액	미 수 납 액		
				계	결 손액	이 월 액
합 계	4,073,708	4,223,841	4,194,195	29,646	4,015	25,631
지 방 세	945,726	1,092,838	1,066,445	26,394	3,946	22,448
취 득 세	494,537	570,802	566,951	3,851	703	3,148
등록면허세	43,235	42,766	42,595	172	1	171
지방소비세	228,127	260,880	260,880	0	0	0
지역자원시설세	30,618	37,713	36,829	885	25	859
지방교육세	143,209	166,841	160,577	6,264	77	6,186
지난년도수입	6,000	13,836	△1,387	15,223	3,139	12,084
세외수입	82,932	96,210	92,958	3,252	69	3,183
경상적수입	18,326	20,535	20,415	120	0	120
임시적수입	64,606	75,675	72,543	3,132	69	3,063

- 지방세 미수납액은 263억 9,382만원이며,
징수결정액 대비 2.4%로 지난해(2.7%)보다 감소하였음.
- 취득세는 38억원으로 0.1로 지난해(0.1%)와 비슷
- 지방소비세는 100% 수납되었음
- 지역자원시설세는 2.3%로 지난해(2.4%)보다 0.1% 감소
- 지방교육세는 3.8%로 지난해(4.0%)보다 0.2%감소
- 지난년도수입은 110%로 지난해(78.1%)보다 31.9% 증가

- 세외수입 미수납액은 32억 5,237만원이며, 징수결정액 대비 3.4%로 지난해(3.9%)보다 0.5% 감소하였음.

□ 결손액

(단위 : 천원)

구 분	결손처분액	사 유 별					
		무재산	행방불명	시효소멸	배분금액 부족	평가액 부족	기타
합 계	4,014,972	2,275,564	28,276	203,779	763,020	739,879	4,454
지 방 세	3,945,695	2,258,538	28,276	155,277	759,271	739,879	4,454
세외수입	69,277	17,026	-	48,502	3,749	-	-

- 2017년도 결손처분액은 40억 1,497만원으로 미수납액의 13.5%를 차지하고 있음.

그 사유를 보면,

- 행방불명 0.1%(2,828만원),
- 소멸 5.1%(2억 378만원),
- 배분금액 부족 19%(7억 6,302만원)
- 무재산 56.7%(22억 7,556만원 등이 결손처분 되었음.

(단위 : 억원)

연 도 별	2013	2014	2015	2016	2017
결손처분액	59	36	48	53	40

- 결손처분액은 미수납액의 규모를 줄이는 긍정적인 요인도 가지고 있으나, 불성실한 납세의무자에게 납세의무를 소멸시켜주고 체납액에 대해 징수권을 포기하는 것으로 결손처분의 사유를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으며, 대다수 성실납세자들과의 조세형평성을 저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
- 결손처분을 한 이후에도 소멸시효전까지 다른 재산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재산조회 및 현장확인 등을 실시하여 탈루되는 세원이 없도록 철저한 사후 관리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 세입금 이월액(미수납액)

(단위 : 천원)

과 목	이월액	사 유 별									
		무재산	행방불명	납세태만	폐업 또는 부도	채무자 회생법에 의한유예	격리 또는 입원	소송계류	국외이주	자금압박	기 타
계	25,631,213	3,033,351	585,347	7,241,233	3,905,064	383,596	19,691	195,480	3,874	5,679,010	4,584,567
지방세수입	22,448,124	2,955,911	583,369	5,561,376	3,785,043	383,596	19,691	129,226	3,863	5,679,010	3,347,039
취 득 세	3,147,607	616,173	22,050	588,869	390,508	1,267	18,496	105,467	0	479,984	924,793
등록면허세	170,647	15,404	3,035	42,024	16,844	411	0	117	0	29,662	63,149
지역자원시설세	859,345	118,587	22,814	197,592	166,894	13,157	0	1,074	83	228,077	111,067
지방교육세	6,186,275	682,880	176,232	1,846,963	677,901	12,266	253	11,402	563	1,508,774	1,269,042
지난년도수입	12,084,251	1,522,868	359,237	2,885,928	2,532,897	356,495	942	11,165	3,217	3,432,513	978,988
세 외 수 입	3,183,089	77,440	1,978	1,679,856	120,021	0	0	66,254	12	0	1,237,528
공유재산임대료	14,900	0	0	14,916	0	0	0	0	0	0	-16
도로사용료	51,878	0	0	51,730	134	0	0	0	0	0	14
하천사용료	38,447	0	0	38,447	0	0	0	0	0	0	0
입장료수입	12,844	0	0	0	0	0	0	0	0	0	12,844
기타사용료	1,431	0	0	155	0	0	0	0	0	0	1,276
기타수수료	118	0	0	118	0	0	0	0	0	0	0
기타이자수입	298	0	0	29	0	0	0	0	0	0	268
공유재산매각 수입금	1,120,389	0	0	244,455	0	0	0	0	0	0	875,934
과징금	700	0	0	500	0	0	0	0	0	0	200
변상금	17,988	0	0	17,988	0	0	0	0	0	0	0
과태료	17,895	0	0	8,923	569	0	0	0	0	0	8,403
시도비 반환금수입	265,935	0	0	0	0	0	0	0	0	0	265,935
그외수입	19,760	0	0	332	1,346	0	0	15,027	0	0	3,054
지난년도수입	1,620,506	77,440	1,978	1,302,263	117,971	0	0	51,227	12	0	69,615

나. 세출결산

□ 분야별 세출결산

(단위 : 백만원)

분 야 별	예산현액	지출원인 행 위 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 월 액	집행잔액
합 계	4,073,708	3,894,096	3,861,971	133,901	77,836
일반공공행정	450,415	446,388	445,746	1,286	3,382
공공질서및안전	409,249	388,130	379,441	29,349	459
교육	246,214	246,209	246,209	-	4
문화및관광	232,651	226,331	224,611	5,841	2,199
환경보호	231,137	227,000	226,939	61	4,136
사회복지	1,186,271	1,182,219	1,182,138	2,906	1,227
보건	82,399	81,830	81,196	922	281
농림해양수산	477,816	466,731	466,387	9,882	1,546
산업·중소기업	169,959	148,596	144,795	21,293	3,871
수송및교통	203,230	175,020	159,259	42,619	1,352
국토및지역개발	147,711	127,434	127,047	19,735	928
예비비	54,333	-	-	-	54,333
기타	182,325	178,208	178,201	7	4,117

- 2017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규모를 보면, 예산현액이 4조 737억 791만원으로 이중 3조 8,619억 7,061만원(94.8%)이 지출되고, 1,339억 89만원(3.3%)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집행잔액은 778억 3,641만원(1.9%)이 발생하였음.
- 지출액은 3조 8,619억 7,061만원으로 전년도 3조 7,503억 1,174만원 보다 1,116억 5,887만원이 증가되었음.
- 다음연도 이월액은 1,339억 89만원으로 전년도 1,343억 7,019만원과 비슷한 규모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하였다고 볼 수 있으나, 보다 이월규모를 최소화하여 여유재원에 대한 효율적인 활용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집행잔액은 778억 3,641만원으로 이는 어려운 재정여건임에도 도의회
의 심의를 받은 사업비가 집행되지 못하고 매년 수백억원씩 불용률
이 나타나는 것은 예산편성이 부풀려진 것은 아닌지, 사업추진에
문제점이 없는지 등 재검토가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며, 당초 사업
추진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임. 또한,
집행잔액 최소화를 위해 사업 시작단계부터 마무리까지 관리에
철저를 기할 필요가 있음.

- 세출예산의 집행실적 지표가 전반적으로 양호한 편이나, 매년 2천
억원이 넘는 사업비가 다음연도로 이월되거나 집행잔액이 발생하고
있어, 소요예산 예측의 정확성 및 사업계획의 정밀성 등을 통해
이월액 및 불용액 최소화를 통해 당해연도 가용재원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임.

○ 분야별 세출결산 지출액을 보면

-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예산현액 4,504억 1,463만원으로 이중 4,457억 4,603만원(98.9%)이
지출되고, 12억 8,648만원(0.3%)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집행
잔액은 33억 8,212만원(0.8%)이 발생하였음.

-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예산현액 4,092억 4,871만원으로 이중 3,794억 4,128만원(92.7%)이
지출되고, 293억 4,879만원(7.1%)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집행잔액은 4억 5,864만원(0.1%)이 발생하였음.

- 교육 분야는

예산현액 2,462억 1,356만원으로 이중 2,462억 947만원 (99.9%)이 지출되고, 다음연도로 이월액은 없으며, 집행잔액 409만원(0.1%)이 발생하였음.

- 문화 및 관광 분야는

예산현액 2,326억 5,107만원으로 이중 2,246억 1,112만원(96.5%)이 지출되고, 58억 4,109만원(2.5%)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집행잔액은 21억 9,886만원(0.9%)이 발생하였음.

- 환경보호 분야는

예산현액 2,311억 3,684만원으로 이중 2,269억 3,916만원(98.2%)이 지출되고, 6,133만원(0.1%)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집행잔액은 41억 3,635만원(1.8%)이 발생하였음.

- 사회복지 분야는

예산현액 1조 1,862억 7,134만원으로 이중 1조 1,821억 3,798만원 (99.7%)이 지출되고, 29억 607만원(0.3%)이 다음연도로 이월 되었으며, 집행잔액은 12억 2,729만원(0.1%)이 발생하였음.

- 보건 분야는

예산현액 823억 9,867만원으로 이중 811억 9,589만원 (98.5%)이 지출되고, 이월액은 9억 2,179만원, 집행잔액은 2억 8,098만원이 발생하였음.

-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예산현액 4,778억 1,553만원으로 이중 4,663억 8,702만원(97.6%)이 지출되고, 98억 8,216만원(2.1%)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집행잔액은 15억 4,635만원이 발생하였음.

-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예산현액 1,699억 5,857만원으로 이중 1,447억 9,489만원(85.2%)이 지출되고, 212억 9,251만원(12.5%)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집행잔액은 38억 7,117만원(2.2%)이 발생하였음.

- **수송 및 교통 분야는**

예산현액 2,032억 3,038만원으로 이중 1,592억 5,908만원 (78.3%)이 지출되고, 426억 1,909만원(20.9%)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집행잔액은 13억 5,222만원(0.7%)이 발생하였음.

-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예산현액 1,477억 1,051만원으로 이중 1,270억 4,747만원(86%)이 지출되고, 197억 3,507만원(86%)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집행잔액은 9억 2,797만원(0.6%)이 발생하였음.

- 분야별로 살펴보면 대부분이 90%이상의 집행율을 나타내고 있으나, 수송및교통분야(21.7%)와 산업·중소기업분야(14.8%), 국토및지역개발분야(13.4%)는 평균보다 다소 높은 이월비율로 인해 80%대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어 이에 대한 사유와 향후 대책에 대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다. 예산 이용·이체·전용

예산이용 : 없음

예산이체

○ 예산이체 : 총 108건에 61억 7,246만원임.

○ 전년도 73건 438억 2,010만원 대비 건수는 47.96% 증가하였고, 금액은 376억원이 감소한 규모임.

□ 예산이체

○ 예산이체액 : 총 108건에 61억 7,246만원임.

(단위: 천원)

부서명	통계목	이체금액		승인일자	사 유
		감액	증액		
총 108건		6,172,461	6,172,461		
혁신도시관리 본부	203-03 시책추진업무추진비	4,000		2017-02-16	조직 개편에 따른 부서 폐지로 예산 이체
균형발전과	203-03 시책추진업무추진비		4,000		
혁신도시관리 본부	301-02 장학금및학자금	5,000		2017-02-16	조직 개편에 따른 부서 폐지로 예산 이체
균형발전과	301-02 장학금및학자금		5,000		
혁신도시관리 본부	301-11 기타보상금	200,000		2017-02-16	조직 개편에 따른 부서 폐지로 예산 이체
균형발전과	301-11 기타보상금		200,000		
혁신도시관리 본부	402-01 민간자본사업보조	87,000		2017-02-16	조직 개편에 따른 부서 폐지로 예산 이체
균형발전과	402-01 민간자본사업보조		87,000		
혁신도시관리 본부	101-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	5,736		2017-02-16	조직 개편에 따른 부서 폐지로 예산 이체
균형발전과	101-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		5,736		
혁신도시관리 본부	201-01 사무관리비	60,594		2017-02-16	조직 개편에 따른 부서 폐지로 예산 이체
균형발전과	201-01 사무관리비		60,594		
혁신도시관리 본부	201-02 공공운영비	23,670		2017-02-16	조직 개편에 따른 부서 폐지로 예산 이체
균형발전과	201-02 공공운영비		23,670		
혁신도시관리 본부	202-01 국내여비	20,000		2017-02-16	조직 개편에 따른 부서 폐지로 예산 이체
균형발전과	202-01 국내여비		20,000		
혁신도시관리 본부	201-01 사무관리비	53,000		2017-02-16	조직 개편에 따른 부서 폐지로 예산 이체
균형발전과	201-01 사무관리비		53,000		

부서명	통계목	전용금액		승인일자	사 유
		감액	증액		
혁신도시관리 본 부	201-02 공공운영비	7,000		2017-02-16	조직 개편에 따른 부서 폐지로 예산 이체
균형발전과	201-02 공공운영비		7,000		
혁신도시관리 본 부	201-01 사무관리비	160,000		2017-02-16	조직 개편에 따른 부서 폐지로 예산 이체
균형발전과	201-01 사무관리비		160,000		
혁신도시관리 본 부	201-03 행사운영비	10,000		2017-02-16	조직 개편에 따른 부서 폐지로 예산 이체
균형발전과	201-03 행사운영비		10,000		
혁신도시관리 본 부	201-03 행사운영비	8,600		2017-02-16	조직 개편에 따른 부서 폐지로 예산 이체
균형발전과	201-03 행사운영비		8,600		
혁신도시관리 본 부	301-09 행사실비보상금	1,400		2017-02-16	조직 개편에 따른 부서 폐지로 예산 이체
균형발전과	301-09 행사실비보상금		1,400		
혁신도시관리 본 부	201-03 행사운영비	38,600		2017-02-16	조직 개편에 따른 부서 폐지로 예산 이체
균형발전과	201-03 행사운영비		38,600		
혁신도시관리 본 부	301-09 행사실비보상금	1,400		2017-02-16	조직 개편에 따른 부서 폐지로 예산 이체
균형발전과	301-09 행사실비보상금		1,400		
혁신도시관리 본 부	201-03 행사운영비	8,000		2017-02-16	조직 개편에 따른 부서 폐지로 예산 이체
균형발전과	201-03 행사운영비		8,000		
혁신도시관리 본 부	301-09 행사실비보상금	2,000		2017-02-16	조직 개편에 따른 부서 폐지로 예산 이체
균형발전과	301-09 행사실비보상금		2,000		
혁신도시관리 본 부	201-01 사무관리비	15,079		2017-02-16	조직 개편에 따른 부서 폐지로 예산 이체
균형발전과	201-01 사무관리비		15,079		
혁신도시관리 본 부	202-01 국내여비	32,130		2017-02-16	조직 개편에 따른 부서 폐지로 예산 이체
균형발전과	202-01 국내여비		32,130		

부서명	통계목	이체금액		승인일자	사 유
		감액	증액		
혁신도시관리 본 부	203-01 기관운영업무추진비	6,600		2017-02-16	조직 개편에 따른 부서 폐지로 예산 이체
	203-01 기관운영업무추진비		6,600		
혁신도시관리 본 부	203-04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0		2017-02-16	조직 개편에 따른 부서 폐지로 예산 이체
	203-04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0		
여성발전센터	201-01 사무관리비	7,500		2017-03-23	2017. 3. 20. 여성발전센터 폐지에 따른 예산 이체
	201-01 사무관리비		7,500		
여성발전센터	201-02 공공운영비	21,438		2017-03-23	2017. 3. 20. 여성발전센터 폐지에 따른 예산 이체
	201-02 공공운영비		21,438		
여성발전센터	201-03 행사운영비	3,408		2017-03-23	2017. 3. 20. 여성발전센터 폐지에 따른 예산 이체
	201-03 행사운영비		3,408		
여성발전센터	301-09 행사실비보상금	3,780		2017-03-23	2017. 3. 20. 여성발전센터 폐지에 따른 예산 이체
	301-09 행사실비보상금		3,780		
여성발전센터	301-11 기타보상금	6,120		2017-03-23	2017. 3. 20. 여성발전센터 폐지에 따른 예산 이체
	301-11 기타보상금		6,120		
여성발전센터	307-01 의료및구료비	9,600		2017-03-23	2017. 3. 20. 여성발전센터 폐지에 따른 예산 이체
	307-01 의료및구료비		9,600		
여성발전센터	101-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	79,368		2017-03-23	2017. 3. 20. 여성발전센터 폐지에 따른 예산 이체
	101-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		79,368		
여성발전센터	201-01 사무관리비	9,000		2017-03-23	2017. 3. 20. 여성발전센터 폐지에 따른 예산 이체
	201-01 사무관리비		9,000		
여성발전센터	201-02 공공운영비	3,500		2017-03-23	2017. 3. 20. 여성발전센터 폐지에 따른 예산 이체
	201-02 공공운영비		3,500		

부서명	통계목	이체금액		승인일자	사 유
		감액	증액		
여성발전센터	201-03 행사운영비	3,000		2017-03-23	2017. 3. 20. 여성발전센터 폐지에 따른 예산 이체
여 성 정 책 관	201-03 행사운영비		3,000		
여성발전센터	202-01 국내여비	1,000		2017-03-23	2017. 3. 20. 여성발전센터 폐지에 따른 예산 이체
여 성 정 책 관	202-01 국내여비		1,000		
여성발전센터	301-09 행사실비보상금	2,000		2017-03-23	2017. 3. 20. 여성발전센터 폐지에 따른 예산 이체
여 성 정 책 관	301-09 행사실비보상금		2,000		
여성발전센터	405-01 자산및물품취득비	4,500		2017-03-23	2017. 3. 20. 여성발전센터 폐지에 따른 예산 이체
여 성 정 책 관	405-01 자산및물품취득비		4,500		
여성발전센터	101-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	37,859		2017-03-23	2017. 3. 20. 여성발전센터 폐지에 따른 예산 이체
여 성 정 책 관	101-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		37,859		
여성발전센터	201-01 사무관리비	16,200		2017-03-23	2017. 3. 20. 여성발전센터 폐지에 따른 예산 이체
여 성 정 책 관	201-01 사무관리비		16,200		
여성발전센터	201-02 공공운영비	138,663		2017-03-23	2017. 3. 20. 여성발전센터 폐지에 따른 예산 이체
여 성 정 책 관	201-02 공공운영비		138,663		
여성발전센터	204-03 특정업무경비	5,400		2017-03-23	2017. 3. 20. 여성발전센터 폐지에 따른 예산 이체
여 성 정 책 관	204-03 특정업무경비		5,400		
여성발전센터	301-09 행사실비보상금	440		2017-03-23	2017. 3. 20. 여성발전센터 폐지에 따른 예산 이체
여 성 정 책 관	301-09 행사실비보상금		440		
여성발전센터	405-01 자산및물품취득비	20,250		2017-03-23	2017. 3. 20. 여성발전센터 폐지에 따른 예산 이체
여 성 정 책 관	405-01 자산및물품취득비		20,250	2017-03-23	
여성발전센터	401-01 시설비	192,000		2017-03-23	2017. 3. 20. 여성발전센터 폐지에 따른 예산 이체
여 성 정 책 관	401-01 시설비		192,000	2017-03-23	

부서명	통계목	이체금액		승인일자	사 유
		감액	증액		
여성발전센터	101-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7,209		2017-03-23	2017. 3. 20. 여성발전센터 폐지에 따른 예산 이체
여 성 정 책 관	101-04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17,209		
여성발전센터	201-01 사무관리비	150,000		2017-03-23	2017. 3. 20. 여성발전센터 폐지에 따른 예산 이체
여 성 정 책 관	201-01 사무관리비		150,000		
여성발전센터	202-01 국내여비	3,000		2017-03-23	2017. 3. 20. 여성발전센터 폐지에 따른 예산 이체
여 성 정 책 관	202-01 국내여비		3,000		
여성발전센터	301-09 행사실비보상금	4,000		2017-03-23	2017. 3. 20. 여성발전센터 폐지에 따른 예산 이체
여 성 정 책 관	301-09 행사실비보상금		4,000		
여성발전센터	201-01 사무관리비	15,000		2017-03-23	2017. 3. 20. 여성발전센터 폐지에 따른 예산 이체
여 성 정 책 관	201-01 사무관리비		15,000		
여성발전센터	201-01 사무관리비	9,000		2017-03-23	2017. 3. 20. 여성발전센터 폐지에 따른 예산 이체
여 성 정 책 관	201-01 사무관리비		9,000		
여성발전센터	201-02 공공운영비	1,000		2017-03-23	2017. 3. 20. 여성발전센터 폐지에 따른 예산 이체
여 성 정 책 관	201-02 공공운영비		1,000		
여성발전센터	301-09 행사실비보상금	300		2017-03-23	2017. 3. 20. 여성발전센터 폐지에 따른 예산 이체
여 성 정 책 관	301-09 행사실비보상금		300		
여성발전센터	101-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8,356		2017-03-23	2017. 3. 20. 여성발전센터 폐지에 따른 예산 이체
여 성 정 책 관	101-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8,356		
여성발전센터	201-01 사무관리비	34,200		2017-03-23	2017. 3. 20. 여성발전센터 폐지에 따른 예산 이체
여 성 정 책 관	201-01 사무관리비		34,200		
여성발전센터	201-02 공공운영비	1,024		2017-03-23	2017. 3. 20. 여성발전센터 폐지에 따른 예산 이체
여 성 정 책 관	201-02 공공운영비		1,024		

부서명	통계목	이체금액		승인일자	사 유
		감액	증액		
여성발전센터	301-09 행사실비보상금	540		2017-03-23	2017. 3. 20. 여성발전센터 폐지에 따른 예산 이체
여 성 정 책 관	301-09 행사실비보상금		540		
여성발전센터	201-01 사무관리비	4,450		2017-03-23	2017. 3. 20. 여성발전센터 폐지에 따른 예산 이체
여 성 정 책 관	201-01 사무관리비		4,450		
여성발전센터	201-02 공공운영비	1,000		2017-03-23	2017. 3. 20. 여성발전센터 폐지에 따른 예산 이체
여 성 정 책 관	201-02 공공운영비		1,000		
여성발전센터	301-09 행사실비보상금	3,600		2017-03-23	2017. 3. 20. 여성발전센터 폐지에 따른 예산 이체
여 성 정 책 관	301-09 행사실비보상금		3,600		
여성발전센터	101-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	20,322		2017-03-23	2017. 3. 20. 여성발전센터 폐지에 따른 예산 이체
여 성 정 책 관	101-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		20,322		
여성발전센터	201-01 사무관리비	13,500		2017-03-23	2017. 3. 20. 여성발전센터 폐지에 따른 예산 이체
여 성 정 책 관	201-01 사무관리비		13,500		
여성발전센터	201-02 공공운영비	1,200		2017-03-23	2017. 3. 20. 여성발전센터 폐지에 따른 예산 이체
여 성 정 책 관	201-02 공공운영비		1,200		
여성발전센터	101-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8,930		2017-03-23	2017. 3. 20. 여성발전센터 폐지에 따른 예산 이체
여 성 정 책 관	101-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8,930		
여성발전센터	201-01 사무관리비	12,325		2017-03-23	2017. 3. 20. 여성발전센터 폐지에 따른 예산 이체
여 성 정 책 관	201-01 사무관리비		12,325		
여성발전센터	201-02 공공운영비	1,000		2017-03-23	2017. 3. 20. 여성발전센터 폐지에 따른 예산 이체
여 성 정 책 관	201-02 공공운영비		1,000		
여성발전센터	201-01 사무관리비	42,200		2017-03-23	2017. 3. 20. 여성발전센터 폐지에 따른 예산 이체
여 성 정 책 관	201-01 사무관리비		42,200		

부서명	통계목	이체금액		승인일자	사 유
		감액	증액		
여성발전센터	201-02 공공운영비	500		2017-03-23	2017. 3. 20. 여성발전센터 폐지에 따른 예산 이체
여 성 정 책 관	201-02 공공운영비		500		
여성발전센터	201-03 행사운영비	2,450		2017-03-23	2017. 3. 20. 여성발전센터 폐지에 따른 예산 이체
여 성 정 책 관	201-03 행사운영비		2,450		
여성발전센터	301-09 행사실비보상금	1,050		2017-03-23	2017. 3. 20. 여성발전센터 폐지에 따른 예산 이체
여 성 정 책 관	301-09 행사실비보상금		1,050		
여성발전센터	101-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	42,400		2017-03-23	2017. 3. 20. 여성발전센터 폐지에 따른 예산 이체
여 성 정 책 관	101-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		42,400		
여성발전센터	201-01 사무관리비	37,100		2017-03-23	2017. 3. 20. 여성발전센터 폐지에 따른 예산 이체
여 성 정 책 관	201-01 사무관리비		37,100		
여성발전센터	201-03 행사운영비	1,300		2017-03-23	2017. 3. 20. 여성발전센터 폐지에 따른 예산 이체
여 성 정 책 관	201-03 행사운영비		1,300		
여성발전센터	202-01 국내여비	1,400		2017-03-23	2017. 3. 20. 여성발전센터 폐지에 따른 예산 이체
여 성 정 책 관	202-01 국내여비		1,400		
여성발전센터	301-09 행사실비보상금	1,800		2017-03-23	2017. 3. 20. 여성발전센터 폐지에 따른 예산 이체
여 성 정 책 관	301-09 행사실비보상금		1,800		
여성발전센터	101-01 보수	646,260		2017-03-23	2017. 3. 20. 여성발전센터 폐지에 따른 예산 이체
여 성 정 책 관	101-01 보수		646,260		
여성발전센터	101-02 기타직보수	351,671		2017-03-23	2017. 3. 20. 여성발전센터 폐지에 따른 예산 이체
여 성 정 책 관	101-02 기타직보수		351,671		
여성발전센터	101-03 무기계약근로자보수	42,600		2017-03-23	2017. 3. 20. 여성발전센터 폐지에 따른 예산 이체
여 성 정 책 관	101-03 무기계약근로자보수		42,600		
여성발전센터	204-02 직급보조비	23,280		2017-03-23	2017. 3. 20. 여성발전센터 폐지에 따른 예산 이체
여 성 정 책 관	204-02 직급보조비		23,280		

부서명	통계목	이체금액		승인일자	사 유
		감액	증액		
여성발전센터	101-03 무기계약근로자보수	422,587		2017-03-23	2017. 3. 20. 여성발전센터 폐지에 따른 예산 이체
여성정책관	101-03 무기계약근로자보수		422,587		
여성발전센터	201-01 사무관리비	8,330		2017-03-23	2017. 3. 20. 여성발전센터 폐지에 따른 예산 이체
여성정책관	201-01 사무관리비		8,330		
여성발전센터	202-01 국내여비	17,000		2017-03-23	2017. 3. 20. 여성발전센터 폐지에 따른 예산 이체
여성정책관	202-01 국내여비		17,000		
여성발전센터	203-01 기관운영업무추진비	3,300		2017-03-23	2017. 3. 20. 여성발전센터 폐지에 따른 예산 이체
여성정책관	203-01 기관운영업무추진비		3,300		
여성발전센터	203-02 정원가산업무추진비	680		2017-03-23	2017. 3. 20. 여성발전센터 폐지에 따른 예산 이체
여성정책관	203-02 정원가산업무추진비		680		
여성발전센터	203-04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0		2017-03-23	2017. 3. 20. 여성발전센터 폐지에 따른 예산 이체
여성정책관	203-04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0		
여성발전센터	204-01 직책급여무수행경비	6,000		2017-03-23	2017. 3. 20. 여성발전센터 폐지에 따른 예산 이체
여성정책관	204-01 직책급여무수행경비		6,000		
남부출장소	101-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401		2017-07-03	2017. 6. 28.자 조직개편에 따른 예산 이체
내수면산업연구소	101-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401		
남부출장소	201-01 사무관리비	11,600		2017-07-03	2017. 6. 28.자 조직개편에 따른 예산 이체
내수면산업연구소	201-01 사무관리비		11,600		
남부출장소	201-02 공공운영비	55,914		2017-07-03	2017. 6. 28.자 조직개편에 따른 예산 이체
내수면산업연구소	201-02 공공운영비		55,914		
남부출장소	201-03 행사운영비	1,000		2017-07-03	2017. 6. 28.자 조직개편에 따른 예산 이체
내수면산업연구소	201-03 행사운영비		1,000		
남부출장소	401-01 시설비	5,000		2017-07-03	2017. 6. 28.자 조직개편에 따른 예산 이체
내수면산업연구소	401-01 시설비		5,000		

부서명	통계목	이체금액		승인일자	사 유
		감액	증액		
남 부 출 장 소	101-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	8,642		2017-07-03	2017. 6. 28.자 조직개편에 따른 예산 이체
내수면산업연구소	101-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		8,642		
남 부 출 장 소	201-02 공공운영비	2,347		2017-07-03	2017. 6. 28.자 조직개편에 따른 예산 이체
내수면산업연구소	201-02 공공운영비		2,347		
남 부 출 장 소	202-01 국내여비	7,500		2017-07-03	2017. 6. 28.자 조직개편에 따른 예산 이체
내수면산업연구소	202-01 국내여비		7,500		
남 부 출 장 소	207-03 시험연구비	23,211		2017-07-03	2017. 6. 28.자 조직개편에 따른 예산 이체
내수면산업연구소	207-03 시험연구비		23,211		
남 부 출 장 소	101-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	4,303		2017-07-03	2017. 6. 28.자 조직개편에 따른 예산 이체
내수면산업연구소	101-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		4,303		
남 부 출 장 소	207-03 시험연구비	3,187		2017-07-03	2017. 6. 28.자 조직개편에 따른 예산 이체
내수면산업연구소	207-03 시험연구비		3,187		
남 부 출 장 소	101-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	7,148		2017-07-03	2017. 6. 28.자 조직개편에 따른 예산 이체
내수면산업연구소	101-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		7,148		
남 부 출 장 소	207-03 시험연구비	5,569		2017-07-03	2017. 6. 28.자 조직개편에 따른 예산 이체
내수면산업연구소	207-03 시험연구비		5,569		
남 부 출 장 소	101-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	24,187		2017-07-03	2017. 6. 28.자 조직개편에 따른 예산 이체
내수면산업연구소	101-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		24,187		
남 부 출 장 소	201-02 공공운영비	6,704		2017-07-03	2017. 6. 28.자 조직개편에 따른 예산 이체
내수면산업연구소	201-02 공공운영비		6,704		
남 부 출 장 소	207-03 시험연구비	9,109		2017-07-03	2017. 6. 28.자 조직개편에 따른 예산 이체
내수면산업연구소	207-03 시험연구비		9,109		

부서명	통계목	이체금액		승인일자	사 유
		감액	증액		
남 부 출 장 소	403-02 공기관등에대한 자본적대행사업비	2,500,000		2017-07-03	2017. 6. 28.자 조직 개편에 따른 예산 이체
내수면산업연구소	403-02 공기관등에대한 자본적대행사업비		2,500,000		
남 부 출 장 소	101-01 보수	173,000		2017-07-03	2017. 6. 28.자 조직 개편에 따른 예산 이체
내수면산업연구소	101-01 보수		173,000		
남 부 출 장 소	204-02 직급보조비	5,700		2017-07-03	2017. 6. 28.자 조직 개편에 따른 예산 이체
내수면산업연구소	204-02 직급보조비		5,700		
남 부 출 장 소	201-01 사무관리비	5,900		2017-07-03	2017. 6. 28.자 조직 개편에 따른 예산 이체
내수면산업연구소	201-01 사무관리비		5,900		
남 부 출 장 소	201-02 공공운영비	600		2017-07-03	2017. 6. 28.자 조직 개편에 따른 예산 이체
내수면산업연구소	201-02 공공운영비		600		
남 부 출 장 소	203-02 정원기산업무추진비	240		2017-07-03	2017. 6. 28.자 조직 개편에 따른 예산 이체
내수면산업연구소	203-02 정원기산업무추진비		240		
남 부 출 장 소	203-04 부서운영업무추진비	1,500		2017-07-03	2017. 6. 28.자 조직 개편에 따른 예산 이체
내수면산업연구소	203-04 부서운영업무추진비		1,500		
남 부 출 장 소	204-01 직책급여무수행경비	600		2017-07-03	2017. 6. 28.자 조직개편에 따른 예 산이체
내수면산업연구소	204-01 직책급여무수행경비		600		

○ 이는 지방재정법 제4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기구·직제 또는 정원에 관한 법령이나 조례의 제·개정 또는 폐지로 인하여 직무권한 등의 변동이 있는 때에는 상호 이체할 수 있도록 규정함에 따라,

-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업무이관 및 부서간 업무조정에 따라 예산사용 부서를 직제에 맞도록 이체하여 사용한 것으로 판단됨.

□ 예산전용

○ 예산전용액 : 총 23건에 5억 4,210만원임.

(단위: 천원)

부서명	통계목	전용금액		승인일자	사 유
		감액	증액		
총 23건		542,101	542,101		
공 보 관	201-03 행사운영비	6,800		2017-09-12	팸투어행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일부금액을 전용하고자 함
	301-09 행사실비보상금		6,800		
공 보 관	201-03 행사운영비	1,000		2017-12-01	도민홍보대사 홍보활동 증가에 따라 부족분 전용하여 사용하고자 함
	301-09 행사실비보상금		1,000		
공 보 관	201-03 행사운영비	3,000		2017-09-15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필요과목으로 예산을 전용하고자 함
	301-09 행사실비보상금		3,000		
여 성 정 책 관	201-01 사무관리비	144,036		2017-04-26	여성발전센터 폐지로 여성긴급전화 1366 운영을 민간 위탁 방식으로 변경함에 따라 긴급히 소요되는 위탁금(2분기) 예산전용
	307-05 민간위탁금		144,036		
정 책 기 획 관	201-01 사무관리비	10,000		2017-12-20	2019년 정부예산 확보를 위한 신규사업 과제에 대한 자문수당과 회의 참석수당 지급에 필요한 예산을 전용하여 사용하고자 함
	201-01 사무관리비		10,000		
정 책 기 획 관	201-01 사무관리비	17,000		2017-12-20	위원회 운영 실비 지급에 필요한 예산 부족분을 전용하여 사용하고자 함
	201-01 사무관리비		17,000		
정 책 기 획 관	201-01 사무관리비	10,000		2017-05-31	국토균형발전 및 지방분권 촉진센터 사무실의 외부건물 임차에 따라 냉난방기,복사기 등 추가집기가 소요되어 예산전용
	405-01 자산및물품취득비		10,000		
안 전 정 책 과	301-09 행사실비보상금	1,000		2017-08-17	민방위의 날 기념행사 내실화를 위한 계획변경에 따른 전용 신청
	201-03 행사운영비		1,000		
안 전 정 책 과	301-11 기타보상금	1,000		2017-08-17	민방위의 날 기념행사 내실화를 위한 계획변경에 따른 전용 신청
	201-03 행사운영비		1,000		

부서명	통계목	전용금액		승인일자	사 유
		감액	증액		
총 무 과	301-09 행사실비보상금	9,000		2017-08-07	광복절 경축행사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일부 예산을 전용
	201-03 행사운영비		9,000		
자치행정과	201-03 행사운영비	10,000		2017-07-28	주민자치 취지에 부합하도록 민간주도의 자율적 행사로 추진하기 위한 예산 전용
	307-04 민간행사사업보조		10,000		
청년지원과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200,000		2017-06-30	사업단별 시급히 소요되는 교육기자재 구입과 공동훈련센터 구축으로 사업내용(자본적 성격)이 변경되어 집행이 적합한 목적으로 예산전용
	402-01 민간자본사업보조		200,000		
보건정책과	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30,375		2017-07-18	정신요양시설 기능보강사업 예산을 자치단체보조로 집행하는 것이 적정
	403-01 자치단체자본보조		30,375		
농업정책과	201-03 행사운영비	2,500		2017-11-22	농촌체험휴양마을 연찬회를 위해 일부 예산을 전용하여 사용
	301-09 행사실비보상금		2,500		
농업정책과	201-01 사무관리비	500		2017-11-09	농업인의 날 기념행사계획 변경에 따라 일부예산 전용
	301-09 행사실비보상금		500		
유기농산과	201-03 행사운영비	3,200		2017-05-17	친환경농산물 현장체험행사 참여자에 대한 식비, 견학비용 등 각종 실비 집행을 위해 예산 전용
	301-09 행사실비보상금		3,200		
전국체전추진단	201-03 행사운영비	60,000		2017-07-26	전국체전 행사의 원활한 사업추진을위하여 일부 예산을 민간경상보조로 변경 사용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60,000		
전국체전추진단	301-09 행사실비보상금	6,000		2017-08-07	사업계획 변경(사업량 감소)과 단가조정에 따라 필요한 예산과목으로 전용하고자 함
	201-03 행사운영비		6,000		
전국체전추진단	301-09 행사실비보상금	14,400		2017-08-07	사업계획 변경(사업량 감소)과 단가조정에 따라 필요한 예산과목으로 전용하고자 함
	201-03 행사운영비		14,400		
관광항공과	201-01 사무관리비	3,000		2017-04-21	청주공항 개항 20주년 기념 토론회 추진을 위해 당초 편성된목으로 집행이 불가하여 적합한목으로 예산전용
	301-09 행사실비보상금		3,000		

부서명	통계목	전용금액		승인일자	사 유
		감액	증액		
의회사무처	201-01 사무관리비	4,390		2017-11-03	신규행사 계획에 따라 관련 비용을 전용하여 사용하고자 함
	301-09 행사실비보상금		4,390		
자치연수원	201-01 사무관리비	4,000		2017-11-08	교육수요 증가에 따라 원활한 교육운영을 위해 일부 예산을 전용하여 사용하고자 함
	301-09 행사실비보상금		4,000		
내수면산업 연구 소	201-03 행사운영비	900		2017-11-02	교육행사 계획 변경에 따른 예산 전용
	301-09 행사실비보상금		900		

- 예산전용은 『지방재정법』 제49조 제1항 따라 정책사업 내 단위사업간 예산을 변경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의회의 사전심의나 보고 없이 예산을 변경 사용할 수 있는 제도로 사후에 그 내용을 결산서에 명기토록 규정하고 있는 제도임.
- 예산의 전용은 관련법령에 따라 사업내용이나 예산집행에서 발생하는 경직성을 완화하고, 재정운용에 탄력성을 부여하여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제도로써 23건에 5억 4,210만원으로 전년도 82억 2,114만원 보다, 건수와 금액이 감소한 규모임.

라. 계속비 집행

- **2017년도 계속비 집행액**은 스마트미래여성프라자 건립사업 등 4개사업에 2017년 예산액 117억 4,625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115억 438만원을 합한 **232억 5,063만원**임.

- 예산현액의 33.6%인 78억원을 지출하고 예산현액의 66%인 154억원을 다음연도로 이월처리하고 있어, 예산운용측면에서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판단되며, 계속비사업의 당해연도 연부액은 사업추진율을 감안한 탄력적 편성으로 다음연도 이월액을 최소화 하여야 할 것임.

마. 예비비 지출

- **2017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577억 888만원으로
 - 호우피해응급 복구사업 등 15건 33억 7,582만원을 지출결정하여
 - **지출액**은 33억 7,287만원(99.9%)
 - **다음년도이월액**은 없으며
 - **집행잔액**은 294만원이 발생되었음.
- **예비비**는 재해발생 등 예측할 수 없는 지출원인이 발생하였을 경우에 한하여 지출토록 규정하고 있고 행정안전부의 『예산편성 운영기준』에는 예비비의 지출제한은 그 성격이나 제도설치의 취지라는 측면에서는 내제적 제약과 실정법상의 제약으로 구분하여 예비비에 대한 지출한계를 명시하고 있음
 - 호우피해 응급복구, AI차단 긴급방역비, 소송에 따른 판결이나 손해배상 발생 등 예측할 수 없었던 부득이한 비용이 대부분이라고 판단되나, 일부 사업의 경우 당초 예산편성시 충분히 예측이 가능 하였음에도 예산을 편성하지 않아 예비비를 사용 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바, 사업별로 예비비 지출이 적정한지에 대한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바. 이월 사업비 집행

(단위 : 천원)

계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245	133,900,887	179	102,895,370	57	15,556,570	9	15,448,947

- 지방재정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에 사업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연도로 이월되는 사업비는 총 245건 1,339억 89만원으로 예산현액의 3.2%이며 지난해 대비 5억원(△0.3%)이 감소되었음.
- **일반회계 명시이월은** 도정학술 연구용역 사업비 등 179건, 1,028억 9,537만원으로 이월예산의 76.8% 나타남.
 - 명시이월 사업들의 이월사유가 대부분 준공시기 미도래, 국비미교부, 부지 미확보(보상협의지연) 등으로 나타나고 있음.
 - 공사나 용역 등 사업기간이 1년 이상을 초과하여 부득이 하게 명시이월 할 수 밖에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나, 일부사업의 경우 사업추진을 위한 계획수립 시 충분한 검토나 예측이 가능한 경우가 많아 각종 행정 절차나 관계기관 협의절차를 이행한 이후에 예산을 반영하여야 함에도 먼저 예산만 확보하고 있어 민원이나 행정절차 등의 지연으로 부진한 사업추진 실적을 보이고 있음.

< 검토 의견 >

- 명시이월사업들의 예산현액 2,903억원 중 지출액이 60.1% 1,746억원에 불과하고 있어 재정의 효율적 운영을 저해하고 있음.

- 특히, 179건의 명시이월 사업중 36건은 2017회계연도중 지출액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이는 불가피한 사유 발생시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의 예외로서 승인해 주고 있는 명시이월 제도를 남용한다고도 할 수 있는 바,
 - 향후에는 명시이월을 전제로 예산이 편성되지 않도록 사업계획 수립 시 부터 철저를 기해야 할 것이며, 특히 확보된 예산이 전혀 활용되지 못하고 전액 이월된 사업들의 경우 재발 방지를 위해 이월할 수 밖에 없었던 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됨.(첨부서류 661P)
- 사고이월은 『지방재정법』 제50조 제2항에 근거하여 세출예산 중 당해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그 연도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그 부대 경비를 다음연도에 이월하는 제도로
- 2017회계연도 일반회계 사고이월은 과업기간 부족에 따른 이월 등 57건에 155억 5,657만원(이월예산의 11.6%)으로 전년(52건)과 비슷한 수준임.

< 검토의견 >

- 명시이월 사유와 유사하게 매년 연례적으로 반복되는 동절기 공사중지, 준공시기 미도래, 사전절차 미이행 등으로 나타나고 있어 사업별 사고이월 사유를 충분히 검토하여 사고이월이 반복되는 것을 최소화 시킬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사. 집행잔액

(단위 : 천원)

구 분	집행잔액	원 인 별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예산절감	예산집행 잔액	보조금 집행잔액	예비비
일반회계	77,836,409	7,217,763		15,285,396	1,000,194	54,333,055

- 집행잔액은 778억 3,64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9%이며, 전년도 776억 9,838만원보다 1억 3,802만원이 증가되었음.
- 집행잔액의 원인별 내역을 보면
 -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72억 1,776만 3천 원(9.2%)
 - 예산집행잔액 152억 8,539만 6천 원(19.6%)
 - 보조금 집행잔액 10억 19만 3천 원(1.2%)
 - 예비비 543억 3,305만 5천 원(69.8%) 등임.

< 검토의견 >

- 2017년 일반회계 세출예산 결산결과 예산현액대비 집행잔액은 778억원으로 불용율은 1.9%임.
- 또한, 전체 집행잔액 778억 3,641만원에 대한 발생사유를 살펴보면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72억원(9.3%), 예산집행 잔액 152억원(19.6%)을 차지하고 있음.

- 불용액 발생은 예산집행과정에서 계획변경이나 낙찰차액 발생 또는 전년도 이월액으로 추경시 예산삭감이 안되거나, 집행잔액이 크지 않다고 판단하여 정리추경 시 삭감조치 않는 불성실한 경우도 있을 것으로 판단됨.
- 불용액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낙찰차액 등 집행잔액은 사업추진시 발생하는 불가피한 측면이 없지 않으나 어려운 지방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예산을 사장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임.
- 정리추경시 삭감하면 다음연도 예산 확보가 어려울 것이 예상되어 삭감하지 못한 개연성이 있으니, 예산부서에서는 집행잔액의 삭감을 적극 유도하여야 하며, 전 부서 공통 편성목의 집행을 수시로 확인하여 부서간 조정하거나,
- 집행잔액이 과다 발생한 부서의 경우 부득이한 사유에 의한 집행잔액이 아닐 경우 관련 편성목 예산요구액의 일부 삭감 등 편성예산이 최대한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여야 할 것임.
- 무리한 예산확보나 과다편성은 없었는지, 사업계획 등 사전준비가 철저하게 수립되었는지 등 불용액 발생원인을 철저히 재검토하여 향후에는 불용액 발생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편성뿐만 아니라 집행 과정에 대하여도 더욱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음.

집행잔액 천만원 이상, 불용률 50%이상인 사업 현황

(단위 : 천원)

연번	부서	세부사업	예산현액 (㉮)	지출액(㉮)	집행잔액 (㉮=㉮-㉮-㉮)	불용률(%)
계		51개	66,551,174	4,223,954	62,327,220	94
1	건축문화과	국토환경디자인 지원사업	32,000		32,000	100
2	경제정책과	미래전략과제 발굴 및 기획	10,000		10,000	100
3		미래전략과제 발굴 및 기획	19,500	2,980	16,520	85
4	관광항공과	새해맞이 희망축제	50,000	3,510	46,490	93
5		신규 노선 개설 추진	200,000	100,000	100,000	50
6	국제통상과	해외 교류지역과의 우호교류 증진	20,000	9,125	10,875	54
7	균형발전과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운영	15,600		15,600	100
8		산학연 유치지원센터 지원	23,670	6,487	17,183	73
9		산학연 유치지원센터 지원	60,594	18,503	42,091	69
10		공공기관 이전지원	200,000	80,000	120,000	60
11	노인장애인과	시니어클럽 설치비 지원	50,000		50,000	100
12	농업정책과	농업경영체 경영컨설팅지원	17,280	4,680	12,600	73
13	도로과	연금리조트-청풍대교 국지도건설	13,038	226	12,812	98
14	도로관리사업소	청사 시설 관리	30,000	4,434	25,567	85
15		지방도 유지관리 및 재료구입	15,955	4,224	11,731	74
16		청사 시설 관리	158,327	64,195	94,132	59
17	도로관리사업소 옥천지소	지방도관리 및 재료구입	22,337	4,939	17,398	78
18	도로관리사업소 충주지소	지방도유지관리 및 재료 구입	31,909	2,505	29,404	92
19	문화예술산업과	함께하는 충북열린음악회 행사 운영	50,000	12,324	37,676	75

연번	부서	세부사업	예산현액 (간)	지출액(나)	집행잔액 (라=가-나,다)	불용률 (%)
20	바이오정책과	화장품 뷰티 해외전시회 참가	30,000	11,522	18,478	62
21	보건정책과	외국인환자 유치 활성화	90,000	31,205	58,795	65
22	산림녹지과	산불감시활동	18,000	1,611	16,389	91
23		사회서비스분야 인력경비	39,278	18,129	21,149	54
24	수질관리과	한강수계 기금운영경비	10,000		10,000	100
25		비점오염원 저감사업	7,419,480	3,461,362	3,958,118	53
26	예산담당관	예비비 운영	38,092,214		38,092,214	100
27		예비비 운영	16,180,841		16,180,841	100
28		예비비 운영	60,000		60,000	100
29	원예유통식품과	채소류 생산안정 지원사업	54,200	2,308	51,892	96
30	의회사무처	의원 공무국외여행 및 자매결연 지원	16,000		16,000	100
31		의정활동업무추진	51,000	8,427	42,573	83
32	전국체전추진단	전국체전 준비운영	74,000	33,030	40,970	55
33		전국장애인체전 준비운영	185,500	87,322	98,178	53
34		전국체전 준비운영	115,290	56,771	58,519	51
35	정책기획관	도정주요보고서 작성	17,400		17,400	100
36		의원 상해 등 보상	22,000		22,000	100
37	청남대관리사업소	관람객 편의 도모	42,000	16,757	25,243	60
38	체육진흥과	전문체육대회 지원	50,000		50,000	100
39		전국 산악자전거 대회	88,000	40,000	48,000	55
40	총무과	대체인력(행정도우미) 운영	83,747	39,985	43,762	52
41	축산과	가축방역인력 운영	24,414		24,414	100
42	충북경제자유구역청	경제자유구역청 운영지원	25,000		25,000	100
43		경제자유구역청 운영지원	10,000		10,000	100
44		청주에어로폴리스1지구 조성사업	230,000		230,000	100
45		오송바이오폴리스지구 조성지원	2,000,000		2,000,000	100
46		건축행정 추진	15,000	2,193	12,807	85
47		투자유치 활동지원	24,000	4,799	19,201	80
48		기본경비	116,600	41,745	74,855	64
49	충북경제자유구역청충주지청	충주 에코폴리스지구 SPC 설립출자금	225,000		225,000	100
50	치수방재과	풍수해보험	100,000	38,995	61,005	61
51	환경정책과	금강유역 하천하구 정화사업	22,000	9,660	12,340	56

< 사업별 주요 검토의견 >

- 2017년 회계연도 결산자료 요청(충청북도 회계과 1. 23)에서는 주요사업 설명자료 기준을 1건당 예산금액이 자치단체이전, 자치단체등자본이전은 3억원이상, 기타 사업비는 1억원이상인 사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 결산 심사는 사업규모를 떠나 2017년 회계연도에 사업이 충실히 집행되었는지에 대한 심사이므로 전액미집행 및 불용율 50%이상인 사업에 대하여는 사업설명자료를 작성하는 등 개선이 필요함.
- 노인장애인과 시니어클럽 설치지원사업은 노인일자리 사업의 질적·양적 확대추진을 위하여 2014년도부터 2017년까지 매년 도비 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4년동안 전액 불용처리된 대표적인 사업으로 예산편성단계부터 철저한 소요조사를 실시하여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2018년도 예산액 5,000만원에 대한 현재 추진상황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요구됨.
- 충북경제자유구역 이란 전통의학연구소 설립지원 20억원은 2016년에 명시이월사업으로 전액 불용처리된 사업으로 이란측의 송금지연 장기화 및 국제사회의 대 이란 경제·금융제재로 전통의학공동연구소 설립사업 추진협상을 종료하였음(2017. 1. 9).
 - 더구나 이월예산은 예산현액으로 관리되어 사업종료 시 집행잔액을 감액 처리할 수 없어, 다시 활용될 수 없으므로 이월결정시 향후 집행 잔액이나 추진일정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그 규모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으며 20억원의 대규모 예산이 불용처리된 바, 이에 대한 보다 자세한 설명이 요구됨.

- 관광항공과 청주국제공항 전세기 취항 인센티브제공은 1억 5,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민간위탁금으로 전액 집행은 되었으나, 중국정부의 전세기 운항불허로 실적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중국이외의 타 국가로 전세기 취항 및 유치대책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아. 채무부담 행위 : 없음

3. 특별회계 결산

가. 세입·세출결산 총괄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 현액	세입결산액	세출결산액	차인잔액
합 계	486,913	488,367	437,368	50,998
기 타 특 별 회 계	486,913	488,367	437,368	50,998
소 방 특 별 회 계	174,609	175,214	161,678	13,536
의 료 급 여 기 금	225,220	225,295	225,168	127
농 어 촌 개 발 기 금	12,380	12,378	11,972	406
학 교 용 지 부 담 금	32,029	33,600	7,472	26,129
광 역 교 통 시 설	12,253	11,472	2,778	8,694
충청북도균형발전	30,423	30,407	28,301	2,106

- 소방특별회계의 예산현액은 1,746억 902만원이며
 - 세입결산액은 1,752억 1,401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00.3%
 - 세출결산액은 1,616억 7,762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2.6%
 - 차인잔액은 135억 3,639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7.7% 임.
-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예산현액은 2,252억 1,968만원이며
 - 세입결산액은 2,252억 9,496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00.3%
 - 세출결산액은 2,251억 6,782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9.9%
 - 차인잔액은 1억 2,713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0.5%임.
- 농어촌개발기금운용 특별회계의 예산현액은 123억 8,001만원이며
 - 세입결산액은 123억 7,796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9.9%
 - 세출결산액은 119억 7,237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6.7%
 - 차인잔액은 4억 559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3.3%임.

-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의 예산현액은 320억 2,901만원이며
 - 세입결산액은 336억 47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04.9%
 - 세출결산액은 74억 7,159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23.3%
 - 차입잔액은 261억 2,887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81.6%임.

- 광역교통시설부담금 특별회계의 예산현액은 122억 5,289만원이며
 - 세입결산액은 114억 7,219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3.6%
 - 세출결산액은 27억 7,772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22.7%
 - 차입잔액은 86억 9,447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70.9%임.

- 충청북도균형발전 특별회계의 예산현액은 304억 2,286만원이며
 - 세입결산액은 304억 715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9.9%
 - 세출결산액은 283억 118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3%
 - 차입잔액은 21억 597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6.9%임.

나. 세입결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징수액	과오납 반환금	실 제 수납액	미 수납액
합 계	486,913	495,727	488,401	35	488,367	7,360
기 타 특 별 회 계	486,913	495,727	488,401	35	488,367	7,360
소 방 특 별 회 계	174,609	175,325	175,214	-	175,214	111
의 료 급 여 기 금	225,219	225,295	225,295	-	225,295	-
농 어 촌 개 발 기 금	12,380	12,378	12,378	-	12,378	-
학 교 용 지 부 담 금	32,029	33,600	33,600	-	33,600	-
광 역 교 통 시 설	12,253	18,722	11,507	35	11,472	7,250
충 청 북 도 균 형 발 전	30,423	30,407	30,407	-	30,407	-

- 2017회계연도 특별회계 세입결산 규모를 보면
소방특별회계 등 6개 특별회계의 예산현액은 4,869억 1,348만원으로,
징수결정액은 4,957억 2,723만원이며,
실제수납액은 4,883억 6,675만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98.5%,
예산현액대비 100.3%의 수납율을 나타내고 있음.
- 특히,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의 경우 미수납액이 72억원 이월되어 사업추진
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는바, 적극적인 징수방안을 수립·추진하여 사업비
가 안정적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개선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다. 세출결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 현액	지출원인 행 위 액	지 출 액	다음연도 이 월 액	집행잔액
합 계	486,913	441,374	437,368	11,300	38,245
기 타 특 별 회 계	486,913	441,374	437,368	11,300	38,245
소 방 특 별 회 계	174,609	165,683	161,678	11,300	1,632
의 료 급 여 기 금	225,220	225,168	225,168	-	52
농 어 촌 개 발 기 금	12,380	11,972	11,972	-	408
학 교 용 지 부 담 금	32,029	7,472	7,472	-	24,557
광 역 교 통 시 설	12,253	2,778	2,778	-	9,475
충 청 북 도 균 형 발 전	30,423	28,301	28,301	-	2,122

- 2017회계연도 특별회계 세출결산 규모를 보면
소방특별회개 등 6개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4,869억 1,348만원으로

- 지출액은 4,373억 6,831만원으로 예산현액의 91.3%이며
- 집행잔액은 382억 4,529만원으로 예산현액의 7.9%임.

○ 회계별 지출액 및 집행잔액(예산현액대비)은

- **소방특별회계**

- 지출액은 1,616억 7,762만원(93%)
- 집행잔액은 16억 3,153만원(0.9%)

-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 지출액은 2,251억 6,782만원(99.9%),
- 집행잔액은 5,186만원(0.1%)

- **농어촌개발기금 특별회계**

- 지출액은 119억 7,237만원(97%),
- 집행잔액은 4억 764만원(3%)

-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 지출액은 74억 7,159만원(23.3%),
- 집행잔액은 245억 5,741만 원(76.7%)

-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 지출액은 27억 7,772만원(22.7%),
- 집행잔액은 94억 7,517만원(77.3%)

- **충청북도균형발전 특별회계**

- 지출액은 283억 118만원(93%),
- 집행잔액은 21억 2,168만원(7%)

< 과다 발생 집행잔액 내역 >

특별회계명	집행잔액(억원)	예산현액 대비
계	382	
○ 학교용지부담금	246	77%
○ 광역교통특별회계	95	77%
○ 균형발전특별회계	21	7%
○ 농어촌개발기금	4	3%
○ 소방특별회계	16	1%

- 특별회계는 특별한 사업 운용을 위해 수입·지출을 일반회계와 분리하여 독립적으로 운용하는 회계로 특정한 세입과 특정한 세출에 충당한다는 특수성이 있기는 하나 일반회계 집행을 95%에 비해 매우 낮은 집행을 보이고 있음.
- 큰 규모의 예산이 사용되지 못하고 다음연도로 이월되거나 불용처리되고 있어, 사업추진에 이상이 없는지, 자금운용에 문제점은 없는지에 등에 대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 특히, 이월률이나 불용률이 과다한 특별회계의 경우 그 사유와 대책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고, 매년 반복적으로 일어날 경우 이에 대한 방지책 등 대책마련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② 기금결산

1. 기금 운용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전년도말 현재액	조성액	사용액	당해연도말 현재액
계	552,525	438,584	184,240	806,869
양성평등기금	6,409	359	55	6,713
통합관리기금	4,072	1,116	722	4,466
남북교류협력기금	2,087	19	-	2,105
자활기금	2,086	293	182	2,196
사회복지기금	25,715	4,959	1,694	28,980
식품진흥기금	11,988	959	511	12,435
투자진흥기금	226	2,547	-	2,773
중소기업육성기금	50,735	22,003	35,049	37,690
체육진흥기금	2,647	21	-	2,669
재난관리기금	28,145	10,169	5,885	32,429
환경보전기금	31,384	3,438	2,609	32,213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6,320	94	83	6,331
청소년육성기금	1,179	312	11	1,480
지역개발기금	379,532	392,295	137,439	634,388

- 『지방자치법 제142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의하여 충청북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각 기금의 여유자금의 효율적인 활용과 필요에 따라 공공목적 사업에 융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통합관리기금'을 비롯하여 현재 총 14개의 기금이 설치되어 운용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의하여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결산 보고서를 결산서와 함께 제출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 기금은 특정한 사업 추진의 융통성, 효과성,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행정의 신축성을 높이고 특정사업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예산과는 별도로 조성하여 운영하는 제도로
- 충청북도의 기금은
 - 2017회계연도에 총 14개 기금이 운용되고 있으며, 2016년도말 5,525억 2,471만원에서 2017회계연도중 4,385억 8,437만원을 조성하고, 1,842억 3,975만원을 사용하여 당해연도말 잔액은 8,068억 6,933만원임.
 - 2017회계연도에 대규모 증가사유는 2017년 1월부터 지방기금법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공기업특별회계에서 지역개발기금으로 전환**
- 기금별로 보면
 - **양성평등기금**은 전년도말 64억 881만원에서 당해연도에 3억 5,911만원을 조성하고 5,522만원을 사용하여 당해연도말 잔액은 67억 1,269만원임.
 - **통합관리기금**은 전년도말 40억 7,202만원에서 당해연도에 11억 1,616만원을 조성하고 7억 2,182만원을 사용하여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44억 6,636만원임.
 - **남북교류협력기금**은 전년도말 20억 8,686만원에서 당해연도에 1,855만원을 조성하여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21억 540만원임.
 - **자활기금**은 전년도말 20억 8,563만원에서 당해연도에 2억 9,286만원을 조성하고 1억 8,232만원을 사용하여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21억 9,617만원임.
 - **사회복지기금**은 전년도말 257억 1,507만원에서 당해연도에 49억 5,895만원을 조성하고 16억 9,377만원을 사용하여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289억 8,025만원임
 - **식품진흥기금**은 전년도말 119억 8,762만원에서 당해연도에 9억 5,911 만원을 조성하고 5억 1,136만원을 사용하여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124억 3,537만원임

- **투자진흥기금**은 전년도말 2억 2,586만원에서 당해연도에 25억 4,666만원을 조성하여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27억 7,253만원임.
-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전년도말 507억 3,532만원에서 당해연도에 220억 331만원을 조성하고 350억 4,850만원을 사용하여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376억 9,013만원임.
- **체육진흥기금**은 전년도말 26억 4,746만원에서 당해연도에 2,116만원을 조성하고 미집행하여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26억 6,858만원임.
- **재난관리기금**은 전년도말 281억 4,494만원에서 당해연도에 101억 6,937만원을 조성하고 58억 8,508만원을 사용하여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342억 2,922만원임.
- **환경보전기금**은 전년도말 313억 8,383만원에서 당해연도에 34억 3,809만원을 조성하고 26억 892만원을 사용하여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322억 1,299만원임.
-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은 전년도말 63억 2,007만원에서 당해연도에 9,407만원을 조성하고 8,300만원을 사용하여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63억 3,115만원임.
- **청소년육성기금**은 전년도말 11억 7,942만원에서 당해연도에 3억 1,179만원을 조성하고 1,100만원을 사용하여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14억 8,022만원임.
- **지역개발기금**은 전년도말 3,795억 3,180만원에서 당해연도에 3,922억 9,521만원을 조성하고 1,374억 3,874만원을 사용하여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6,343억 8,827만원임.

2. 기금운용 명세

< 수 입 >

(단위 : 백만원)

구분	이월액 (사고 등)	수 입									
		계	전입금	보조금	차입금	융자금 회 수 (이자포함)	예탁금 원 금 회 수	예치금 회 수	예수금	이자 수입	기타 수입
계	678	598,472	16,038		103,302	79,694	67,783	89,315	2,790	17,156	222,394
양성평 등 기 금		467	300					108		52	7
통합관 리 기 금		32,763					24,333	4,523	2,790	1,116	
남북교 류 기 금		34						16		19	
자활기 금		703				275		410		18	
사회복 지 기 금		17,352	4,746				2,638	9,755		213	
식품진 흥 기 금		2,397				516		1,438		100	344
투자진 흥 기 금		2,773						226		9	2,538
중소기 업 기 금		72,739	1,000			20,370		50,735		634	
체육진 흥 기 금		47						26		21	
재난관 리 기 금	678	23,610	9,692				4,676	8,765		274	204
환경보 전 기 금		10,422						6,984		236	3,203
농촌전 문 인 력 기 금		6,414						6,320		89	5
청소년 육 성 기 금		321	300					9		10	1
지역개 발 기 금		428,431			103,302	58,534	36,136			14,366	216,093

< 지 출 >

(단위 : 백만원)

구분	지 출										다 음 연 도 이 월 액 (사고 등)
	계	비용자성 사업비	융자성 사업비	인 력 운영비	기본 경비	예치금	예탁금	차입금 원리금 상 환	예수금 원리금 상 환	기타 지출	
계	599,120	11,881	44,199			312,477	95,090	127,434	8,036	4	30
양성평 등기	467	55				112	300				
통합관 리기	32,763					2,727	22,000		8,036		
남북교 류기	34					34					
자활기 금	703	82	100			520					
사회복 지기	17,352	1,694				15,658					
식품진 흥기	2,397	458	50			1,435	450			4	
투자진 흥기	2,773					2,773					
중소기 업기	72,739	1,000	34,049			37,690					
체육진 흥기	47					7	40				
재난관 리기	24,288	5,885				18,403					
환경보 전기	10,392	2,609				6,083	1,700				30
농촌전 문기	6,414	83				6,331					
청소년 육성기	321	11				10	300				
지역개 발기	428,431	4	10,000			220,693	70,300	127,434			

○ 기금운용 내역을 보면

- 수입에서 총수입액은 5,984억 7,237만원으로

- 전입금 160억 3,800만원(2.6%)
- 차입금 1,033억 205만원(17.3%)
- 용자회수금 796억 9,435만원(13.3%)
- 예탁금원금회수 677억 8,322만원(14.9%)
- 예치금회수 893억 1,478만원(50.4%)
- 예수금 27억 9,000만원(0.4%)
- 이자수입 171억 5,633만원(2.8%)
- 기타(과징금, 과태료 등) 2,223억 9,363만원(37.1%)입

- 지출에서 총지출액은 5,991억 2,038만원으로

- 비용자성사업비 118억 8,110만원(1.9%)
- 용자성사업비 441억 9,850만원(7.4%)
- 예치금 3,124억 7,684만원(52.1%)
- 예탁금 950억 9,000만원(15.8%)
- 차입금 원리금상환 1,274억 3,449만원(21.3%)
- 예수금 원리금상환 80억 3,561만원(1.3%)
- 기타 383만원(0.001%)입

○ 「충청북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각 기금의 여유자금은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14개 기금 중 양성평등기금 등 7개 기금이 예탁하고 있음.

- | | | | |
|----------|---------|---------------|-------|
| - 통합관리기금 | 220억원 | - 양성평등기금 | 3억원 |
| - 식품진흥기금 | 4.5억원 | - 체육진흥기금 | 0.4억원 |
| - 환경보전기금 | 17억원 | - 청소년육성기금 | 3억원 |
| - 지역개발기금 | 703억원 등 | 950억원이 예탁되었음. | |

< 검토의견 >

- **통합관리기금**은 각 기금의 여유자금을 매년 증가되는 복지수요 및 지역개발 사업 등에 필요한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함으로써 기금의 효율성을 높여나가고 있음
 - 전년도말 조성액 40억원에서 2017회계연도말에는 44억원으로 소폭 증가하였는데, 이는 **예탁금 이자수입 발생에 원인에 있음.**

- **양성평등기금**은 남녀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확대, 한부모가정과 여성의 복지증진사업 등 여성의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운영되고 있는 기금으로
 - 2017연도에는 전입금, 예치금 이자수입 등으로 4억 6,682만원을 조성한 후, 여성발전 공모사업으로 10개 단체, 4,300만원의 각종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남북교류협력기금**은 남북교류협력 및 통일정책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조성된 기금으로, 남북한 화해분위기에 맞추어 그동안 우리도에서 추진했던 금강산사과 및 옥천 묘목보내기 사업 뿐만 아니라 타 시·도보다 선제적 대응으로 기금을 활용할 필요가 있음.

- **자활기금**은 자활기업 등의 자립을 위해 사업장 임대자금을 장기 저리로 융자하여 저소득층의 안정적인 사업기반 제공으로 자활·자립 조기 성공지원, 자활사업 참여자의 공동체 의식 형성 및 근로의식을 고취하여 일자리 창출을 마련하고 있으나, **전세자금 신청자가 저조하여 연간적정 예산 편성 및 수급자의 자활지원을 위한 고유목적사업의 지속 발굴이 필요함.**

- 사회복지기금은 장애인복지기금 등 총 4개의 기금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특히, 재해구호기금과 사회복지사업 및 기초생활보장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설치된 기금인 만큼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발굴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의 수준향상을 위해 1989년부터 조성된 기금인 바, 그동안 음식문화개선, 모범업소지원, 향토음식관련 사업비 지원 등을 펼치고 있으나, 다양한 기금사업을 발굴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 체육진흥기금은 일정기간 지출 없이 200억원 적립을 목표로 순세계 잉여금의 3% 범위내에서 조성하고 있으며, 2017년도에는 일반회계 전 입금은 없고 예치금회수 2,615만원과 이자수입 2,111만원에 불과하여 기금확보 등에 대한 다양한 노력이 필요함.
- 청소년육성기금은 불우청소년의 진학과 직업훈련, 생활정착 지원을 위해 조성하였으나 이자수입 감소로 인해 사업실적(2015년 37명, 19백만원, 2016년 21명 1,050만원, 2017년 22명, 1,100만원)이 저조한 바, 기금 추가확충 방안을 마련하여 보다 많은 취약계층 청소년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임.
- 환경보전기금은 2007년도부터 운용하여 연도말 현재 322억 1,299만원을 적립하여 200억원 조성목표를 달성하였으나, 향후에는 기금설치 목적에 적합한 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자연환경 보전 방안을 강구해 나가야 할 것임.

- 투자진흥기금은 기업유치가 불리한 남·북부지역(6개군)의 전략적 투자유치 지원을 위해 설치되었으며, 2017년도말 조성액은 27억 7,253억원을 적립하여 운용되고 있음.
-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으로 경쟁력강화를 위해 조성된 기금으로 2017년도 사용액은 350억 4,850만원이며, 당해연도말 조성액은 376억 9,013만원으로 나타남. 현재 전국적으로 높은 실업율이 나타나고 있어 중소기업육성기금의 혜택을 받는 관내기업들과 연계하여 실업률 감소방안도 강구할 필요가 있음.
-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은 2017년도말 현재 63억 3,115만원을 조성하여 농촌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하는데 일익을 담당하고 있으나, 향후 농촌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일반회계를 통한 예산지원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도록 기금 운용규모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재해의 예방, 응급조치 및 복구사업을 위해 설치된 기금으로
 - 2017회계연도에는 일반회계로부터 전입금 96억 9,200만원, 예치금 이자수입2억 7,369만원을 등을 조성하였고,
 - 기금의 고유목적사업인 재난예방 및 응급복구사업에 58억 8,502만원을 사용하여 당해연도말 324억 2,922만원을 조성하였음.
 - 앞으로 대형 재난·재해 등의 증가로 재난관리 기금의 활용이 증가하고 있음.
 - 따라서, 법에서 정한(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 : 매년도 최저적립액은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

결산액의 평균연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적립금이 최대한 적립될 수 있도록 노력함과 아울러 그동안 미 적립한 금액에 대한 적립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지역개발기금은 주민복지증진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지방공기업과 지역개발사업 지원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기금으로 지방기금법 제2조에 의거 2017. 1. 1.부터 공기업특별회계에서 기금으로 전환되었음.
- 주요재원은 지역개발채권 발행수입, 기금의 운용수익금으로 충당하여 2017연도말 조성액은 6,343억 8,826만원의 규모로 지역개발채권발행으로 조성된 기금이 지역개발사업 등에 용자되는 바, '17년 5건 803억원, '18년 5건 570억원으로 용자신청이 저조하여 적극적인 기금활용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임.

③ 채권·채무 결산

1. 채권현재액

(단위:천원)

회 계 별	지난해말 현재액	당해연도 발생액	당해연도 소멸액	당해연도 현재액
합 계	693,459,116	240,149,620	238,393,350	695,215,386
일 반 회 계	41,879,732	4,355,001	8,476,745	37,757,989
특 별 회 계	39,635,124	24,945,543	25,104,650	39,476,017
소 방 특 별 회 계	-	1,136	-	1,136
충북도립대학특별회계	368,839	-	368,839	-
농어촌개발기금특별회계	39,266,285	24,944,407	24,735,811	39,474,881
기 금	611,944,260	210,849,075	204,811,955	617,981,380

- 2017년도말 채권현재액은 6,952억 1,539만원으로 전년도말 현재액 6,934억 5,912만원보다 17억 5,627만원(0.3%)이 증가하였음.
- 일반회계는 전년도 418억 7,932만원보다 41억 2,175만원(△9.8%)이 감소된 377억 5,799만원임.
- 특별회계는 전년도 396억 3,512만원보다 1억 5,911만원(△0.4%)이 감소된 394억 7,602만원으로,
- 기금은 전년도보다 60억 3,712만원(0.9%)이 증가되었음.

2. 채무 현재액

(단위 : 천원)

구 분	지난해말 현재액	당해연도 발생액	당해연도 소멸액	당해연도말 현재액
합 계	693,710,345	103,302,050	112,616,736	684,395,659
기 금	693,710,345	103,302,050	112,616,736	684,395,659
지역개발기금	693,710,345	103,302,050	112,616,736	684,395,659

- 충청북도가 갚아야 할 채무는 전년도 현재액 6,937억 1,034만원에서 당해연도에 1,033억 205만원을 발행하고 1,126억 1,674만원이 상환되어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6,843억 9,566만원으로 93억 1,468만원 (△1.3%) 감소됨.
- 충청북도가 갚아야 할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채무는 모두 소멸되어 부채가 없으며, 이는 지방채 발행을 최대한 억제함과 동시에 적극적인 지방채상환에 따른 것이며, 기금(지역개발채권)만 당해연도말 6,843억 9,566만원임.

4] 재산·물품 결산

1.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단위 : 천원)

구 분	전년도말 현재액	당 해 연 도 증 감		당해연도말 현재액
		증	감	
합 계	7,920,408,562	231,917,705	29,253,871	8,123,072,396
행 정 재 산	7,779,792,873	223,186,047	23,950,976	7,979,027,944
- 공용재산	6,637,239,619	136,021,413	8,279,936	6,764,981,096
- 공공용재산	1,011,588,030	87,164,634	15,671,040	1,083,081,623
- 기업용재산	130,400,900	-	-	130,400,900
- 보존용재산	564,324	-	-	564,324
일 반 재 산	140,615,689	8,731,658	5,302,894	144,044,453

- 2017년도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8조 1,230억 7,239만원으로 전년도말 현재액 7조 9,204억 856만원보다 2,026억 6,383만원(2.6%)이 증가된 것으로
 - 이는 도로, 하천 등 사회기반시설 증가 및 부지매입, 건물신축에 따른 행정재산의 증가로 인한 것으로 적정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행정재산은 전년도말 현재액 7조 7,797억 9,287만원보다 1,992억 3,507만원(2.6%)이 증가된 7조 9,790억 2,794만원이며,
 - 일반재산은 전년도말 현재액 1,406억 1,569만원보다 34억 2,876만원(2.4%)이 증가된 1,440억 4,445만원임.

2. 종류별 현황

(단위 : 천원)

종류별	전년도말 현재액	당해연도증감		당해연도말 현재액
		증	감	
합계	7,920,408,562	231,917,705	29,253,871	8,123,072,396
토지	1,160,667,021	93,292,476	22,221,117	1,231,738,380
건물	396,938,928	26,375,858	5,034,410	418,280,377
입목축	8,254,762	-	1,219,996	7,034,766
공작물	6,204,968,756	109,796,848	112,500	6,314,653,104
기계기구	1,013,816	-	-	1,013,816
선박	1,561,603	914,635	-	2,476,238
항공기	6,883,800	-	-	6,883,800
무체재산	3,269,052	17,389	335,848	2,950,593
유가증권	133,400,900	1,000,000	-	134,400,900
용익물권	3,449,922	520,500	330,000	3,640,422

- **2017도 재산 순 증감액**은 전년도말 현재액(7조 9,204억 856만원)대비 2,026억 6,383만원(2.6%)이 증가됨.
 - 토지 710억 7,136만원 (전년도 대비 6.1%)
 - 건물 213억 4,145만원 (" 5.3%) 등으로 나타남.
- 일정규모 이상의 공유재산의 경우 기준가격을 명시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 취득 또는 처분토록 하고 있는 바, 도로 등 사회기반시설 증가 및 부지매입, 건물신축에 따른 재산의 증가로 판단됨.

3. 물품증감 및 현재액

(단위 : 개/천원)

구분	전년도말 보유	당해연도 증감실적						당 해 연도말 보유
		취 득			처 분			
		소계	구매	관리전환	소계	매각	기타	
수량	3,346	378	377	1	88	86	2	3,636
금액	56,037,735	9,499,036	9,497,117	1,919	702,417	654,885	47,532	64,834,355

○ 2017년도말 물품수량 및 현재액은

3,636개 648억 3,435만원으로 전년도말보다 290개 감소, 87억 9,662만원 (15.7%)이 증가하였음.

○ 증감현황을 보면

- 증가부분은 구매 377개 94억 9,712만원, 관리전환 1개 192만원으로 378개 94억 9,904만원이 증가하였고,
- 감소부분은 매각 86개 6억 5,488만원, 기타 2개 4,753만원 등 88개 7억 242만원이 감소하였음.

< 검토의견 >

- 2017회계연도에 378개 94억원의 물품을 취득하고, 88개 7억원의 물품을 처분하여, 실제로는 290개 품목 87억원의 물품이 증가되었음.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57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은 회계연도마다 물품의 취득사용 및 처분에 관한 수급관리계획을 세워야 하며, 같은법 제58조에 따라 주요 물품의 정수와 사용기준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주요 물품 정수는 조직의 규모, 공무원 수, 시설규모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통하여 정해야 할 것이나 실제 물품 보유현황을 보면, 정수가 올바르게 책정되었는지, 원활한 행정처리를 위한 현실성 있는 물품 정수 책정을 위한 검토가 필요함.

※ 물품 증감 현황

품 명	단 위	전연도말 현 재	당해연도 물품 증감현황						당해연도말 보유현황
			취 득			처 분			
			구매	관리 전환	소계	매각	기타	소계	
		3,346	377	1	378	86	2	88	3,636
미니버스	대	55	8	0	8	1	0	1	62
버스	대	14	3	0	3	2	0	2	15
일반승용차	대	72	2	0	2	0	0	0	74
미니밴또는밴	대	2	0	0	0	0	0	0	2
스포츠유틸리티차량	대	50	14	0	14	3	2	5	59
덤프트럭	대	9	1	0	1	1	0	1	9
화물트럭	대	74	6	0	6	0	0	0	80
구급차	대	114	5	0	5	0	0	0	119
소방펌프차	대	54	8	0	8	0	0	0	62
소방물탱크차	대	13	4	0	4	0	0	0	17
소방화학차	대	4	2	0	2	0	0	0	6
소방사다리차	대	10	2	0	2	0	0	0	12
구조공작차	대	4	0	0	0	0	0	0	4
조연차	대	7	0	0	0	0	0	0	7
화재조사차	대	0	1	0	1	0	0	0	1
지휘차	대	1	1	0	1	0	0	0	2
도로보수차	대	2	0	0	0	0	0	0	2
노면청소차	대	4	0	0	0	0	0	0	4
분무기탑재차	대	8	0	0	0	0	0	0	8
견인트럭	대	1	0	0	0	0	0	0	1
탱크트럭	대	3	1	0	1	0	0	0	4
전기자동차	대	4	0	0	0	0	0	0	4
무정전전원장치	대	174	19	0	19	1	0	1	192
냉방기	대	324	21	0	21	17	0	17	328
향온항습기	대	84	4	0	4	1	0	1	87
냉난방기	대	654	52	1	53	15	0	15	692

품 명	단 위	전연도말 현 재	당해연도 물품 증감현황						당해연도말 보유현황
			취 득			처 분			
			구매	관리 전환	소계	매각	기타	소계	
실험용세척기	대	19	2	0	2	0	0	0	21
미량원심분리기	대	47	0	0	0	0	0	0	47
건조캐비닛또는오븐	대	68	3	0	3	0	0	0	71
실체현미경	대	76	1	0	1	0	0	0	77
전자현미경	대	4	0	0	0	0	0	0	4
신호발생기	대	22	0	0	0	0	0	0	22
분광광도계	대	35	2	0	2	0	0	0	37
기체크로마토그래프	대	34	3	0	3	0	0	0	37
액체크로마토그래프	대	34	3	0	3	0	0	0	37
고압증기멸균기 또는소독기	대	63	2	0	2	3	0	3	62
노트북컴퓨터	대	402	42	0	42	18	0	18	426
구내교환장비	대	20	13	0	13	0	0	0	33
복사기	대	286	31	0	31	10	0	10	307
다기능복사기	대	145	3	0	3	5	0	5	143
비디오프로젝터	대	185	7	0	7	7	0	7	185
구내방송장치	대	32	2	0	2	0	0	0	34
비디오편집기	대	6	0	0	0	0	0	0	6
영상정보 디스플레이장치	대	33	1	0	1	0	0	0	34
디지털캠코더 또는비디오카메라	대	88	106	0	106	2	0	2	192
디지털비디오레코더	대	6	2	0	2	0	0	0	8

5 결산검사 결과 요약

- 충청북도 결산검사 위원(대표위원 박종규외 6명)은 2017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에 대한 검사를 실시(2017. 4. 19 - 4. 30)하여 총 14건의 개선 및 권고사항을 지적하였음

< 결산검사 지적사항 목록 >

연번	소관부서	주요내용
1	구조구급과 (소방행정과)	긴급구조통제단 장비구매 집행 미흡
2	회계과	세입세출외 현금의 효율적 관리운영 권고
3	회계과 (전부서)	회계공무원 부재시 직무대리 미지정 운영
4	세정과	지방세 지난년도수입 세입예산 산정 불합리
5	혁신도시 발전추진단	장기간 미회수된 만기 도래 채권 회수관리 철저
6	예산담당관	일반회계 예산운용의 효율성 제고 방안 강구 권고
7	예산담당관	집행잔액 과다발생 사업 관리 철저
8	세정과	지방세 세입예산 추계 정확성 미흡
9	치수방재과	하천사용료 부과 징수 소홀
10	예산담당관	성과보고서 성과지표 선정 개선
11	회계과	지방자치단체 재무제표검토기준 철저 준수
12	예산담당관 (복지정책과, 식의약 안전과,일자리기업과)	기금결산보고서 작성 개선 권고
13	회계과	공용재산 관리 철저
14	회계과	대손설정률 제도 개선

6 주요 재정사항 요약

○ 요약 재정상태표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7년		2016년	
	금 액	구성비	금 액	구성비
유동자산	816,347	8.41%	713,099	7.50%
투자자산	357,137	3.68%	430,306	4.52%
일반유형자산	715,501	7.37%	678,016	7.13%
주민편의시설	385,918	3.97%	381,391	4.01%
사회기반시설	7,426,347	76.49%	7,298,458	76.75%
기타비유동자산	8,052	0.08%	8,669	0.09%
자 산 총 계	9,709,302	100%	9,509,939	100%
유동부채	248,104	27.95%	253,834	27.57%
장기차입부채	557,647	62.82%	579,138	62.90%
기타비유동부채	81,921	9.23%	87,766	9.53%
부 채 총 계	887,672	100%	920,738	100%
고정순자산	8,486,284	96.20%	8,314,344	96.80%
특정순자산	295,063	3.34%	227,823	2.65%
일반순자산	40,284	0.46%	47,034	0.55%
순 자 산 총 계	8,821,630	100%	8,589,201	100%
부채 및 순자산총계	9,709,302		9,509,939	

○ 충청북도의 지방공사·공단 자산·부채를 포함한 재정상태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지방자치단체	지방공사·공단
총자산*	10,096,126	9,709,302	386,824
총부채	1,036,255	887,672	148,583

※ 총자산 10,096,126백만원은 지방공사공단 출자금 130,175백만원을 포함하고 있으며, 지방공사·공단 출자금을 차감할 경우 총자산은 9,965,951백만원임

○ 발생주의 복식부기 재무분석

분야	지표명	산식	2017	2016
재정 상태	① 총자산 대비 총부채 비율	총부채 / 총자산 × 100	9.14%	9.68%
	② 총부채 대비 차입부채 비율	차입부채 / 총부채 × 100	82.50%	80.80%
	③ 유형고정자산 대비 부채비율	부채 / 유형고정자산 × 100 ※ 부채 : 유동부채+장기차입부채 ※ 유형고정자산 : 일반유형자산+주민편의시설+사회기반시설	9.45%	9.97%
	④ 재정자금 대비 금융상품 비율	장·단기 금융상품 / 재정자금 × 100	34.31%	62.81%
	⑤ 현금창출자산 대비 총부채 비율	총부채 / 현금창출자산 × 100 ※ 현금창출자산:(유동자산-기타유동자산+일반미수금)+ 장기금융상품+(장기대여금-학자금위탁대여금)+기타투자자산	89.66%	93.57%
	⑥ 재정자금 대비 차입부채 비율	차입부채 / 재정자금 × 100 ※ 재정자금 : 현금 및 현금성자산+장·단기 금융상품	105.26%	113.56%
	⑦ 유동자산 대비 유동부채 비율	유동부채 / 유동자산 × 100	30.39%	35.60%
	⑧ 미수세금 대비 대손충당금 비율	미수세금 대손충당금 / 미수세금(대손충당금 차감전) × 100	15.21%	16.57%
	⑨ 단기민간융자금 비율	단기민간융자금 / 장·단기 민간융자금 × 100	37.75%	17.72%
재정 운영	① 예산 대비 세출 비율	세출액(일반회계+기타특별회계) / 예산현액(일반회계+기타특별회계) × 100	94.27%	94.45%
	② 경상수익 대비 경상비용 비율	경상비용 / 경상수익 × 100 ※ 경상비용 : 인건비+운영비+재정보전금+조정교부금+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 ※ 경상수익 : 지방세수익+경상세의수익+지방교부세+재정보전금+조정교부금	60.98%	64.07%
	③ 경상비용 대비 이자비용 비율	이자비용 / 경상비용 × 100 ※ 이자비용 : 차입부채 이자비용	1.35%	1.72%
	④ 이자수익 대비 이자비용 비율	이자비용 / 이자수익 × 100	85.65%	98.55%
	⑤ 총수익 대비 경상수익 비율	경상수익 / 총수익 × 100	43.47%	42.29%
	⑥ 경상수익 대비 경상자체조달수익 비율	경상자체조달수익 / 경상수익 × 100 ※ 경상자체조달수익 : 지방세수익+경상세의수익	63.11%	65.68%
	⑦ 자체조달수익 대비 채권 비율	미수자체조달수익(대손충당금 차감후) / 자체조달수익 × 100 ※ 미수자체조달수익 : 미수세금+미수세외수입금+일반미수금	2.51%	2.93%
	⑧ 세외수익 대비 채권 비율	미수세외수익(대손충당금 차감후) / 세외수익 × 100 ※ 미수세외수익 : 미수세외수입금+일반미수금	11.01%	16.78%
	⑨ 총비용 대비 경상비용 비율	경상비용 / 총비용 × 100	28.02%	28.44%
	⑩ 지출액 대비 자산취득 비율	자산취득액 / 지출액 × 100	4.93%	5.49%
회계 책임	① 주민 1인당 총자산	총자산 / 인구수(회계연도말 인구수)	6,089,505	5,974,987
	② 주민 1인당 총부채	총부채 / 인구수(회계연도말 인구수)	556,732	578,489
	③ 주민 1인당 실질부채	실질부채 / 인구수(회계연도말 인구수)	556,732	578,489
	④ 주민 1인당 총수익	총수익 / 인구수(회계연도말 인구수)	2,524,788	2,364,867
	⑤ 주민 1인당 자체조달수익	자체조달수익 / 인구수(회계연도말 인구수)	728,352	680,788
	⑥ 주민 1인당 지방세수익	지방세수익 / 인구수(회계연도말 인구수)	670,967	633,905
	⑦ 주민 1인당 총비용	총비용 / 인구수(회계연도말 인구수)	2,388,715	2,252,634
	⑧ 주민 1인당 민간등이전비용	민간등이전비용 / 인구수(회계연도말 인구수)	218,104	186,739
	⑨ 공무원 1인당 총수익	총수익 / 공무원(현원=(기초+기말)/2)	1,199,524,050	1,168,757,057
	⑩ 공무원 1인당 총비용	총비용 / 공무원(현원=(기초+기말)/2)	1,134,875,742	1,113,289,541
	⑪ 공무원 1인당 급여	총급여 / 공무원(현원=(기초+기말)/2)	68,028,827	66,804,346

7 예비비 지출

(단위 : 천원)

연번	부서별	지출 결정일	지 출 승인액	지출액	이월액	불용액	사 유
계	15건		3,372,871	3,372,871		2,950	
1	여성정책관	2017-08-01	29,550	29,550		450	호우피해 응급복구비 예비비 지원
2	치수방재과	2017-07-27	440,000	440,000			호우피해 응급복구비 예비비 지출
3	치수방재과	2017-10-19	248,413	248,413			7.31~8.1.호우피해하천수해복구예비비지원
4	경제정책과	2017-07-30	62,365	62,365		1,855	2017 대한민국행정정보대전참가예비비 지원
5	유기농산과	2017-06-07	1,000,000	1,000,000			가뭄에 따른 시군별 농업용수 확보를 위한 대책사업 비용 지원
6	유기농산과	2017-07-24	37,351	37,351			2017.6.1.우박피해재난지원금지원
7	유기농산과	2017-11-09	40,125	40,125			9.19 우박피해재난지원금예비비지출
8	유기농산과	2017-10-17	38,355	38,355			2017.7.31.호우피해재난지원금예비비 지원(충주,음성)
9	축산과	2017-11-28	540,000	540,000			고병원성AI차단방역예비비지원
10	축산과	2017-02-22	700,000	700,000			구제역및AI차단을위한방역,매물 등을위한예비비지출
11	축산과	2017-11-28	149,955	149,955		45	고병원성AI차단방역예비비지원(취약지역방역물품등)
12	문화예술산업과	2017-08-01	11,400	11,400		600	호우피해 응급복구비 예비비 지원
13	문화예술산업과	2017-08-01	10,000	10,000			호우피해 응급복구비 예비비 지원
14	균형발전과	2017-04-07	5,357	5,357			청주지방법원소송비용액확정결정에따라원고(신청인)에게소송비용 지급
15	축산위생연구소	2017-11-28	60,000	60,000			고병원성AI차단방역예비비지원(AI 일제검사진단키트비)

○ 2017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577억 888만원

- 호우피해로 인한 응급복구사업 외 14건, 33억 7,582만원을 지출결정하여 0원을 이월하였으며 295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음.

○ 예비비는 재해발생 등 예측할 수 없는 지출원인이 발생하였을 경우에 한하여 지출토록 규정하고 있고 행정자치부 『예산편성 운영기준』에는 예비비의 지출제한은 그 성격이나 제도설치의 취지라는 측면에서는 내재적 제약과 실정법상의 제약으로 구분하여 예비비에 대한 지출한계를 명시하고 있음

- 소송에 따른 판결이나 손해배상 발생, 호우피해복구비, 구제역 긴급방역비 등 예측할 수 없었던 부득이한 비용이 대부분이라고 판단되나, 일부사업의 경우 예산 편성시 충분히 예측이 가능하였음에도 예산을 편성하지 않아 예비비를 사용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바, 사업별로 예비비 지출이 적정한지에 대한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IV. 성과보고서

- 지방재정법 제5조(성과 중심의 지방재정운동)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활동의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하여야 하며, 제2항에 따라 예산의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를 작성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 지방회계법 제15조(결산서의 구성) 및 제16조 제4항에 따라 성과보고서는 성과목표와 실적을 대비하여 작성하고, 사업원가와 성과를 연계하도록 명시하고 있음.
- 충청북도 2017회계연도 결산서 성과보고서에 따르면,
 - 2017년 정책사업 목표수는 129개이며, 이에 따른 세부 지표수는 298개 사업으로 개별지표에 따른 성과달성도를 보면 초과달성이 39건으로 전체사업의 13.1%이며, 달성은 224건으로 75.2%, 미달성은 35건으로 전체의 11.7%에 해당됨.
-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 작성 지침에 따르면 사업목적과 명확히 연계된 결과 지향적 지표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으며, 신뢰성 제고를 위해 충실한 성과분석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 그럼에도 35개 지표는 과도한 목표치 설정 등 성과지표의 설정 근거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 향후 원인분석을 통하여 목표치 설정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음.

< 성과예산 달성현황 >

(단위 : 개)

성과목표			성과달성도		
전 략 목표수	정책사업목표		초과달성	달성	미달성
	개수	지표수			
27	129	298	39	224	35
			13.1%	75.2%	11.7%

V. 성인지 결산

- 성인지예산은 총 71개 사업에 646억 9,756만원이 편성되었으며, 645억 6,378만원이 지출되어 99.8%의 집행율을 보이고 있음.

(단위: 백만원)

회 계 별		사업개수	세출예산현액	지출액	집행률
총 계		71	64,698	64,563	99.79 %
양성평등정책 추진사업	소계	9	10,557	10,550	99.93 %
	일반회계	9	10,557	10,550	99.93 %
	기타특별회계	0	0	0	0.00 %
성별영향분석 평가사업	소계	47	47,085	47,001	99.82 %
	일반회계	45	46,232	46,183	99.90 %
	기타특별회계	2	853	818	95.86 %
자치단체특화 사업	소계	15	7,056	7,012	99.39 %
	일반회계	13	5,761	5,750	99.82 %
	기타특별회계	2	1,295	1,262	97.46 %

- 양성평등정책 추진사업 9개 사업에 10,550백만원(99.93%),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47개 사업에 47,001백만원(99.82%),
자치단체특화사업 15개 사업에 7,012백만원(99.39%)백만원을 집행,
대체적으로 높은 집행률을 보임.
- 성인지 결산결과 양성평등정책추진 등 여성, 노인, 장애인, 아동 등
사회적약자를 위한 사회복지분야에 중점적으로 운영된 것으로 나타남.

VI. 심사의견 요지

-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이나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해 미리 일정액을 책정해 두고자 예비비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재해 및 소송에 따른 판결로 손해배상 발생 등으로 예측할 수 없었던 부득이 비용이 대부분이나,
 - 일부 사업의 경우 당초예산 편성 시 충분히 예측이 가능하였음에도 예산을 편성하지 않아 예비비를 사용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바, 향후 예비비 지출에 있어서 유사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재발방지 등 특단의 대책 강구
- 각종 기금을 고유목적에 위해 다양한 사업의 지속적 발굴로 도민에게 혜택이 될 수 있도록 대책 강구
- 당초예산편성 사업 중 사업계획 변경으로 집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은 추경에 삭감하여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
- 예산을 합리적으로 편성하고 집행하여 집행잔액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해 줄 것을 촉구하고, 불용이 예측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추경 등을 통해 가용재산으로 활용토록 하는 적극적 예산운용을 당부
- 성과보고서 작성 시 전략목표 설정 및 지표 설정에 보다 정확한 설정을 당부

VII. 심사결과 : 원안가결